

2020년 전라북도의회 용역 연구 과제

**감사행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방안**

**2020. 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전라북도의회 용역 연구 과제

**감사행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방안**

**2020. 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감사행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20. 4 ~ 2020. 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용역연구 결과물로서  
전라북도의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문」

### 1. 연구의 목적

-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이후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에 따른 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장한 감사위원회는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개선 방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관심을 가지는 사항임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 전라북도 차원의 합리적인 감사기구 도입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지방자치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 분석,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 실태 분석,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의 문제점을 검토함

### 2.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은 선거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을 선거로 뽑는 제도로써, 양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기관분리형으로서 일본과 미국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관통합형으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지방정부의 감사사례에 유의함
- 미국의 경우, 선출직 감사관(독임제), 외부감사위원회 등을 채택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일본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참고함

□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도입 사례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지향하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운영 근거는 공공감사법에서 찾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131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총 8개가 있으며 모두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이지만, 독립성 규정을 두어 직무상 독립된 상태며 위원장의 직급은 서울과 세종이 2급으로 구성되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가 3급으로 구성되어 특별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제주, 세종과 다른 시도의 직급 격차가 있음
- 이러한 직급 격차가 조직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감사위원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령 변경이 필요함을 보여줌

### 3. 의회의 책임성 강화

□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검토하고자 의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가, 위원(위원장) 선임(위촉) 및 해임(해촉)에 대해 동의권이 있는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혹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는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함

- 8개 감사위원회 중 대전, 충남을 제외한 6개 시도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해당 시도의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추천 관여 비율은 75% 수준이었고, 8개 감사위원회 중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다른 6개 시도 감사위원장 임명에 시도의회의 동의권한이 없어 관여 비율은 25% 수준이었음
- 8개 감사위원회 모두 지방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로 금지 비율은 100%였고, 8개 감사위원회 중 서울, 부산만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6개 시도 감사위원회에는 보고 규정이 없어 의회의 관여 비율은 25% 수준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위원장 임명이나 위원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4.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운영 성과

□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면 긍정적 측면은 다수의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됨으로써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다수의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거나 감사결과의 처리에 있어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기간의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함

- 중복·과잉 감사의 가능성
- 감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 감사부서의 인사권 등 독립성 부족/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미흡
- 감사위원회 소속 한계
- 감사의 운영 및 실효성 문제

□ 독립제 감사기구인 감사관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구분하여 2006년 이후로 감사관제를 유지한 시·도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시·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자체감사에 대해 합의제를 토대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음
- 감사위원회를 경험한 시·도의 합의제 운영 수준은 높으나 초기 제도 개선 시점 운영 경험이 청렴도 제고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감사원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감사평가 성과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는 충남과 제주가 포함되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한 자치단체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경우에 의회에서는 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추세임; 더불어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주문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와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은 검토한 결과 경기도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정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독립제적 감사관제를 활용하면서 추후 법령 변경을 통한 인사, 조직의 유연성을 전제로 감사위원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도입방안

- 전라북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 3개의 모델을 검토하였는데 모델1은 자치단체장 직속 감사위원회, 모델2는 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모델3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형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개선모델1: 자치단체장 직속, 위원임명시청문회 및 의회 동의, 전문감사직렬
  - 개선모델2: 의회 소속, 의회/자치단체장 위원 추천, 전문감사직렬
  - 개선모델3: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의회/자치단체장 위원 추천, 전문감사직렬
- 전라북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권 독립 확보(위원장 임기 및 위원의 시차적 임용 등), 재정권 확보를 제시함

- 전라북도가 감사제도 발전의 마스터 플랜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성과감사/시스템감사 방향, 감사 기능의 분권화를 제시함
  - 감사직렬 설치와 함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 의회 감사 보좌 및 의회소속 감사기구/자치단체 소속 외부 감사위원회 제도
  - 중앙 부처 감사 단일화와 계층 감사제로 성과감사 지향
  - 국가적인 차원의 권역별 지방감사원 및 감사직렬 전국 인사교류, 개방화
  
- 현행 전라북도의 청렴도 평가, 자체감사평가에서의 높은 성과 수준을 넘어 지방분권 환경에 부응한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의 독립성/전문성/합의형 성격을 강화하면서 도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강조

# 목차

「요약문」 ..... I

<제목 차례>

**I.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II. 지방분권시대의 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

1. 감사의 개념 ..... 5  
2. 자치단체의 감사 유형 ..... 5  
3. 자치단체 내부감사의 유형 ..... 9  
    1) 내부감사의 종류 ..... 9  
    2) 내부감사의 조직 유형 ..... 10  
4.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 12  
5. 지방분권화와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변화 ..... 14  
    1) 지방분권과 정부간 관계이론 ..... 14  
    2) 정부간 관계이론과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변화 ..... 20

**III.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 23

1.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 ..... 23  
    1) 미국 ..... 23

2) 영국 .....	25
3) 프랑스 .....	28
4) 일본 .....	30
2.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전략적 시사점 .....	36
1)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비교 .....	36
2)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	38

#### **IV.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 43

1.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 배경 .....	43
2.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	44
3.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	46
1)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설치 현황 .....	46
2)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수준 .....	66
3)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	73
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사례 .....	75
1) 법적 지위 .....	75
2) 기능과 역할 .....	76
5. 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 .....	82

#### **V.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 문제점 진단** ..... 85

1. 중복·과잉감사의 문제점 지속 .....	85
2.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의 미해소 .....	86
3. 감사부서의 독립성 결여 .....	90
4. 자치단체장의 견제 미흡 .....	91
5. 감사위원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 .....	93
6. 감사위원회 재정상 독립의 문제 .....	94
7. 감사위원회의 소속 문제 .....	95

8. 교육감사 이원화 문제 .....	95
9. 감사의 운영 및 실효성 문제 .....	97
10.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 .....	100
11. 감사위원회 관련 자치단체(집행기관/의회)의 인식 .....	107

## **VI.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도입방안** ..... 111

1. 감사위원회의 도입모델의 검토 .....	111
1)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1 .....	111
2)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2 .....	112
3)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3 .....	112
2.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의 도입방안 .....	113
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113
2)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 확보 .....	114
3) 감사위원회의 재정권 확보 .....	115
3. 전라북도 감사제도 발전의 마스터 플랜 .....	116

## **IV. 결론** ..... 119

## **【 참고문헌 】** ..... 123

## **【 부록 】** ..... 127

## 그림 목차

<그림 1> 자치단체의 감사체계 .....	6
<그림 2>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변천 .....	13
<그림 3> 미국 연방-주정부-지방정부 감사제도 .....	25
<그림 4> 영국의 지방감사체계 .....	27
<그림 5> 프랑스의 지방감사체계 .....	29
<그림 6> 프랑스의 내부감사체계 .....	30
<그림 7> 일본의 지방감사체계 .....	34
<그림 8> 일본의 감사위원과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 .....	35
<그림 9>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의 기본모형 .....	39
<그림 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	47
<그림 1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	50
<그림 12>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	53
<그림 13>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	55
<그림 1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	59
<그림 15>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	61
<그림 1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	64
<그림 17>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	80
<그림 18> 합의제/청렴도(12년 기간) 포트폴리오 .....	103
<그림 19> 합의제/청렴도(최근 5년 기간) 포트폴리오 .....	104
<그림 20> 합의제(최근 5년 기간)/감사평가(최근 4년 기간) 포트폴리오 .....	105
<그림 21> 감사평가(최근 4년 기간)/청렴도(최근 5년 기간) 포트폴리오 .....	106
<그림 22> 지방감사에 대한 내부감사 개선모델 1 .....	111
<그림 23> 지방감사에 대한 내부감사 개선모델 2 .....	112
<그림 24> 지방감사에 대한 내부감사 개선모델 3 .....	113
<그림 25> 전라북도 감사제도의 마스터 플랜 .....	117

## 표 목차

<표 1> 자치단체의 감사체계 비교 .....	8
<표 2> 자치단체 내부감사의 유형 .....	9
<표 3>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비교 .....	10
<표 4>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 .....	11
<표 5> Wright, Dunsire, Chandler의 정부간 관계유형의 비교 .....	19
<표 6> 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의 특성 비교 .....	21
<표 7>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제도 개요 .....	32
<표 8> 주요 국가의 지방감사제도의 비교 .....	38
<표 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44
<표 10> 세종시법과 제주특별법 .....	45
<표 1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48
<표 12>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51
<표 13>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54
<표 14>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56
<표 15>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60
<표 16> 강원도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62
<표 1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	65
<표 18> 감사위원회별 지방의회 책임성 .....	67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	68
<표 20>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 사례 .....	73
<표 21>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 .....	78
<표 22>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종류 .....	79
<표 23>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81
<표 24> 현행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	83
<표 25>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비교 .....	84
<표 26> 감사담당자 전문성 확보 관련 제도 운영 비교 .....	89
<표 27> 제감사직렬 및 직류 적용 현황 .....	90
<표 28>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소속 .....	91
<표 29>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비교 .....	97
<표 3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리기준 .....	98
<표 31> 시·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등급 .....	100
<표 32> 시·도별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등급 .....	101

<표 33> 합의체/청렴도/감사평가 포트폴리오 설계 .....	102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집행기관의 감사위원회 인식 .....	107
<표 35> 경기도 의회/집행기관의 감사위원회 인식 .....	108
<표 36> 광역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유형 .....	114

# 1. 서론

## 1. 문제의 제기

- 현행 집행부 1인(감사관) 중심의 독임제형 감사시스템은 감사 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자치단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위원회(다수 참여)를 설치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는 추세를 보임
-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이후로 등장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토대가 된 법률은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의 지방분권 강화 노력에 부응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책임성 강화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노력도 평가 및 자체감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직기구의 개선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행정자치부 차원의 개선 모형에 대한 검토 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해야 하고, 감사위원회가 현재의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면서 현재의 감사부서는 이를 지원하는 보조

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함(김성호 외, 2001: 27)

- 국회의 입법정책 보고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개선 방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조규범, 2018)

## 2. 연구의 목적

-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복 감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율적인 감사체계 운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른 논리로 대두된 감사위원회 제도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sup>1)</sup>
- 현행 독립제형 감사관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북에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독립적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를 확립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함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1)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2006), 충청남도(2011), 세종특별자치시(2014), 서울특별시(2015), 광주광역시(2015), 강원도(2018), 대전광역시(2018), 부산광역시(2019)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2015), 충남 아산시(2016)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감사위원회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후로 2020년 현재의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온 시도별 자치단체 경험 상황을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
  
- 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지방자치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되 일본에 비중을 두어 감사위원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의회의 역할을 검토함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 실태 분석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총 8개 시도의 감사위원회 도입 사례 검토
  - 8개 시도별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수준 분석
  -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 합의제/청렴도/감사평가 포트폴리오 분석
  - 감사위원회 관련 자치단체(집행기관/의회)의 인식 분석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도입의 문제점
  - 중복/과잉 감사, 전문성 부족, 독립성 결여,
  -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
  
-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도입 방안



## II. 지방분권시대의 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감사의 개념

□ 감사란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의 적부 또는 정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감사원, 1998:217)

-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기관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 활동의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은 회계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비위 공직자를 색출하는 활동을 포함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에서는 자체 감사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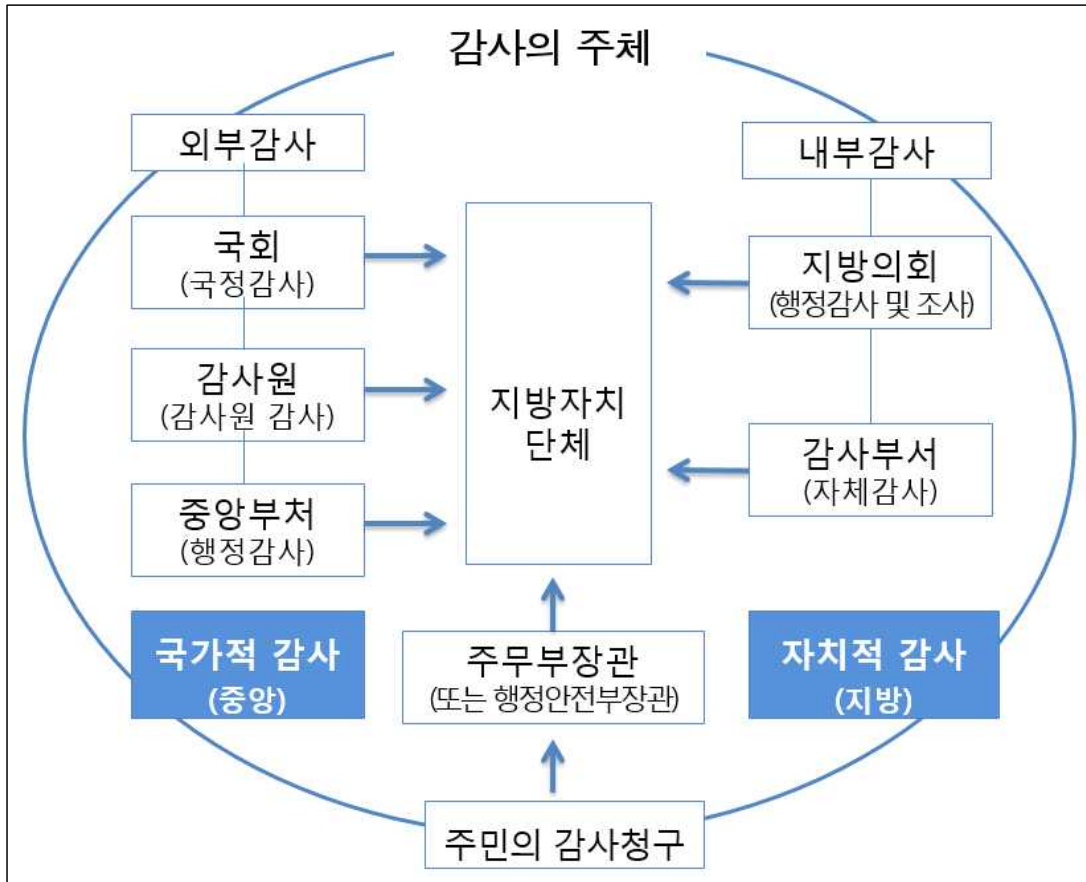
□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수준 감사와 지방수준 감사로 구분함(양지숙, 2018)

- 국가수준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개별부처, 행정안전부)감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수준은 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자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결산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이상욱, 2018)

### 2. 자치단체의 감사 유형

□ 자치단체의 감사체계는 i) 외부감사, ii) 내부감사, iii)주민의 감사청구 등 총 3가지로 이루어짐

<그림 1> 자치단체의 감사체계



□ 외부감사(국가적 감사)는 i) 국회의 국정감사, ii) 감사원의 감사원감사, iii) 중앙부처의 행정감사로 구성됨

- ①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에 예산지원사업(국정감사), 국정의 특정사안(국정조사)을 감사함
- ② 감사원 감사는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회계를 감사함
- ③ 중앙부처의 감사(지도·감독)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71조에 근거하여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에 법령위반사항을 감사함

□ 내부감사(자치적 감사)는 i)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  
ii)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로 구성됨

- ① 자체감사기구 감사는 행정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본청,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를 감사함
- ② 지방의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장의 권한 위탁기관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감사함(김기성, 2008)

□ 주민의 감사청구는 주무부 장관(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자치단체를 감사함

- 주민감사청구제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조성호 외, 2018)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청구요건, 청구대상 및 제외대상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에 청구 절차가 규정됨(조성호 외, 2018). 2005년 1월 지방자치법을 재개정(2006년 1월 시행)하여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조성호 외, 2018)<sup>2)</sup>

---

2) 시·도는 500명 이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자치단체의 감사체계 비교

구분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의 감사 (지도·감독)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 제61조</li> <li>국회법 127조</li> <li>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 제97조</li> <li>감사원법 제 22조~2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7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감사 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41조</li> <li>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li> </ul>
감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감사,</li> <li>국정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검사,</li> <li>직무감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도·감독, 사무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감사,</li> <li>부분감사</li> <li>기강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무감사</li> <li>행정사무조사</li> </ul>
대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감사: 기관 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에 예산지원사업</li> <li>국정조사: 국정의 특정사안 (본회의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검사, 직무감찰: 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단,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시·도) 또는 시도지사(시군자치구)-보고·서류·장부 또는 회계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li> </ul>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기관 : 광역자치단체</li> <li>선택기관: 기초자치단체</li> <li>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항에 의해 국가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적 감사사항 : 자치단체 회계</li> <li>선택적 감사사항: 자치단체에서 재정원조한 자의 회계,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자의 회계, 자치단체가 임명·승인한 단체 등의 회계 등 (김기성, 200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청, 소속기관, 산하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장의 권한 위탁기관 (의회 의결 시)</li> </ul>

### 3. 자치단체 내부감사의 유형

#### 1) 내부감사의 종류

□ 자치단체 내부감사의 종류는 i) 종합감사, ii) 재무감사, iii) 특정감사, iv) 성과감사, v) 복무감사로 분류됨

- ①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임
- ②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시행하는 감사임
-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임
- 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시행하는 감사임
- 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사임

<표 2> 자치단체 내부감사의 유형

구 분	내 용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자료 : 조형석, (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연구보고서, 감사연구원.

## 2) 내부감사의 조직 유형

□ 독립제 감사기구(감사관제)는 1인의 감사기구 장이 부기관장 하에 소속(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되어 보좌기관 역할을 수행함(조형석, 2017)

- 독립제 감사기구는 1인의 감사기구 장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감사관의 결재 또는 전결로 이루어짐
- 독립제 감사기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 감사 결과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짐

□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수의 감사위원이 기관장 아래에 소속(시장 또는 도지사)되어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서울특별시 제외)(조형석, 2017)

- 합의제 감사기구는 다수에 의한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이며, 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이 이루어짐
- 합의제 감사기구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전문성을 확보 가능하며, 감사 결과의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가 이루어짐

<표 3> 독립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비교

구분		독립제 감사기구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속	구성	◆ 1인의 감사기구 장	◆ 위원장과 다수의 감사위원
	소속	◆ 부기관장 소속(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 기관장 소속(시장 또는 도지사)
	직무상 독립	◆ 부기관장의 보좌기관으로 규정	◆ 직무상 독립을 규정(서울특별시 제외)

구분		독임제 감사기구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방식	◆ 독임제(1인의 감사기구 장에 의한 결정)	◆ 합의제(다수에 의한 결정)
	권한	◆ 감사관의 결재 또는 전결	◆ 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
감사처리 결과	전문성	◆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보완적 확보	◆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확보 가능
	책임성 및 신속성	◆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명확, 감사 결과의 신속한 처리	◆ 감사 결과의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약화 및 처리 기간의 장기화 가능

자료 : 조형석, (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감사연구원.

□ 독임제 감사기구의 장점은 i) 책임소재 명확, ii) 사무의 통일성과 신속성 확보가 있음

- 독임제 감사기구의 단점은 i)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 기간 장기화, ii)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 약화, iii) 제주도 등 실무상 여전히 독립성, 전문성 등 논란이 있음

□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점은 i) 전문성 강화, ii) 사무처리의 신중성 보장, iii) 이해의 공평한 조정, 공정성 담보, iv) 신뢰성 제고가 있음

- 합의제 감사기구의 단점은 i) 감사기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전횡 문제 발생가능, ii)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부족, iii) 신뢰성 부족이 있음

<표 4>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

구분	독임제 감사기구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소재 명확</li> <li>• 사무의 통일성과 신속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li> <li>• 사무처리의 신중성 보장</li> <li>• 이해의 공평한 조정, 공정성 담보</li> <li>• 신뢰성 제고</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 기간 장기화</li> <li>•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 약화</li> <li>• 제주도 등 실무상 여전히 독립성, 전문성 등 논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기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전횡 문제 발생가능</li> <li>•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부족</li> <li>• 신뢰성 부족</li> </ul>

## 4.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 1960년대에는 자체감사기구의 형태는 비전담 감사기구 형태였음

- 1961년에는 道가 내무국 - 자치단체의 감독을 담당이었으며, 1963년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가 내무국 - 하부행정기관의 감독을 담당함
- 1964년에 자치단체는 내무국 - 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 감독을 담당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획감사실 설치하여 기획·조정·심사·분석과 감사를 수행함
- 1970년에는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로 변경하면서 감사와 세무의 감찰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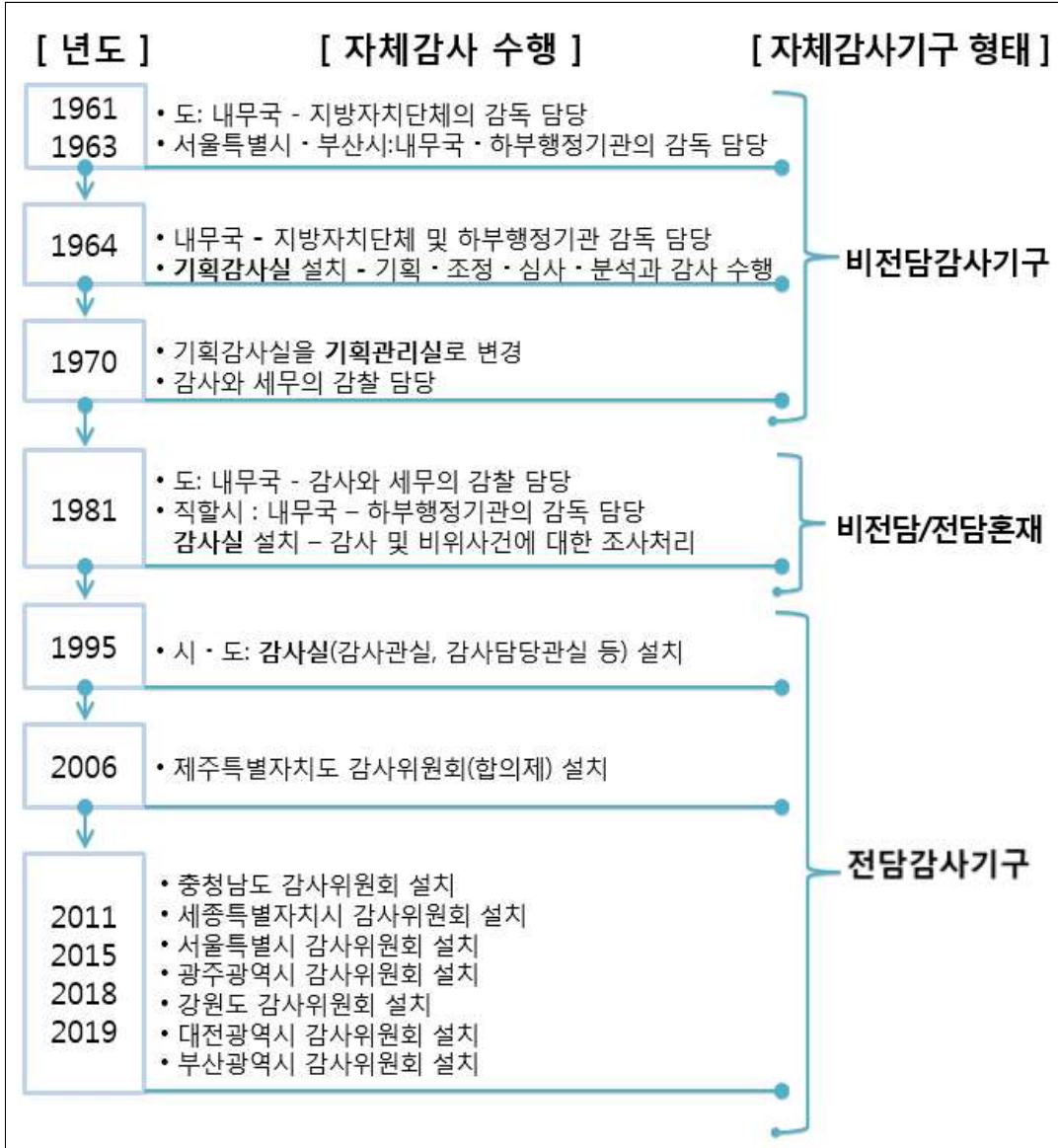
□ 1980년대에는 자체감사기구의 형태는 비전담과 전담 감사기구 형태가 혼재하였음

- 1981년 도는 내무국 감사와 세무의 감찰을 담당하였으며, 직할시는 내무국 - 하부행정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면서, 감사실을 설치하여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처리함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자체감사기구의 형태는 전담감사기구 형태로 굳어짐

- 1995년에는 시·도가 감사실(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합의제)를 설치함
- 2011년 충청남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 2018년 강원도
- 2019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그림 2>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변천



자료 : 조형석,(2017), 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이슈연구, 연구보고서, 감사원 감사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5. 지방분권화와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변화

### 1) 지방분권과 정부간 관계이론

- 정부간 관계이론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기준 제시에 관한 이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이론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17)
  - 지방분권의 시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척도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승종, 1996; 42).
  - 이는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간의 정부간 관계이론은 Wright, Dunsire, Chandler 등의 유형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조성호 외, 2008)

#### (1) 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 Wright는 중앙-지방관계 모형을 대등권위모형(separated - authority model),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포괄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으로 구분함
- 대등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기능(자치권)의 폭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음(조성호 외, 2008)
  -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자치단체로서 지방적 사항을 처리함

- 이 모형의 특징은 대부분의 자치기능이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기능의 범위가 넓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임(조성호, 20008)
  -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중앙-지방관계가 상호의존성의 관계보다는 경쟁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규정한 형태로 양정부의 관계가 갈등관계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최병대 외, 1996)
  
-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은 정부간의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성숙성을 지닌 정부간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직할 하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정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 모형은 정부간의 상호 성숙성을 전제로 이룩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임
  - 이 모형의 특성은 ① 분산된 권력의 제한성, ② 정부간 상호의존성, ③ 제한적 자율성, ④ 정부간 협상 교환관계성과 협력 및 경쟁성으로 나타남(조성호 외, 2008)
  - 즉, 이 모형은 정부간 관계를 상호의존적 협상관계로 규정한 모형임(안용식·김천영, 1995; 23-24).

- 포괄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은 자치단체의 법적인 자율성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기능배분도 중앙에 편재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주성이 극히 약한 형태임(조성호 외, 2008)
  - 전형적인 중앙집권형태로 자치단체의 모든 기능은 중앙정부의 직할 하에 놓여 있으며, 중앙정부에 절대적인 의존관계를 가지며 수직적인 관계를 가짐
-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자치단체는 엄밀히 말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의무를 지닌 자치단체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직접 처리함(조성호 외, 2008)
- 중앙의 국회 또는 행정부 고위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간의 조정을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부문별 일선행정을 지휘·감독함
  - 즉,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임(최병대 외, 1996). 이러한 포괄권위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 설명력이 높음. 즉,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유용함(조성호 외 2008)

## **(2) Dunsire의 정부간 관계유형**

- Dunsire는 중앙-지방관계 모형을 하향식모형, 지방자치모형, 지방연합모형, 정치체제모형 등으로 대별함
- 하향식모형(top-down model)은 정점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하위부분은 지방정부가 있는 계층적 정부형태를 전제로 함(조성호 외, 2008)

-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지 중앙정부의 대리자 역할만 하며 중앙통제의 강도는 매우 높음(조성호 외, 2008)

□ 지방자치모형(local autonomy model)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호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 파악함(조성호 외, 2008)

- 그리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봄

□ 지방연합모형(Association of local autonomy model)은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관(Authority)이라고 상정함(조성호 외, 2008)

- 즉 지방자치단체들(local authorities)의 집합체라는 관점 하에 중앙은 지방에 대해 일방적 지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협상·타협·교환 등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봄

□ 정치체제모형(political system model)은 중앙 - 지방간의 관계는 선거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의 정치집단끼리의 관계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임(조성호 외, 2008)

- 이 모델에서의 중앙통제는 직접통제보다는 정당을 통한 간접통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Andrew Dunsire, 1981; 173-176)

### **(3) Chandler의 정부간 관계유형**

□ Chandler는 영국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행정기관모형(Agency model),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대리인모형(Stewardship

model), 상호공존모형(Power dependence model) 등으로 구분함  
(조성호 외, 2008)

□ 행정기관모형에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순 하부 행정 기관의 성격을 가짐(조성호 외, 2008)

- 즉,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이 모형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음(조성호 외, 2008)

□ 동반자모형에서는 주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만, 운영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이 허용됨(조성호 외, 2008)

- 즉, 중앙의 집권성 뿐 아니라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정책파트너로 인식함(조성호 외 2008)

□ 대리인모형에서는 동반자모형과 유사하게 중앙과 지방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인정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허용함(조성호 외, 2018)

- 그러나 여기서 재량권은 동반자모형에서는 운영차원이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재량권을 의미함

□ 상호공존모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상이한 권력과 자원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하는 형태를 보여줌(조성호 외, 2019)

- 즉, 지방정부가 단지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됨

□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시, 정책수립의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행정집행과 관련해서는 필요 자원을 지니고 있지 못함

- 반면, 지방정부는 행정집행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Chandler, 1991; 김순은, 2003; 317-319).

□ 이와 같은 Wright, Dunsire, Chandler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학문적 정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됨(조성호 외, 2008)

- 이를테면, Wright의 대등권위모형은 Dunsire의 지방자치모형과 Chandler의 상호공존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08)
- 그리고 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은 Dunsire의 지방자치연합모형과 정치체제모형과 Chandler의 대리인모형과 공통점이 있음
- Wright의 포괄권위모형은 Dunsire의 하향식모형과 Chandler의 행정기관모형과 동반자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조성호 외, 2008)

<표 5> Wright, Dunsire, Chandler의 정부간 관계유형의 비교

구 분	정부간 관계의 유형		
Wright	대등권위모형	중첩권위모형	포괄권위모형
Dunsire	지방자치모형	지방연합모형 정치체제 모형	하향식모형
Chandler	상호공존모형	대리인모형	행정기관모형, 동반자모형

자료 : 조성호 외(2008),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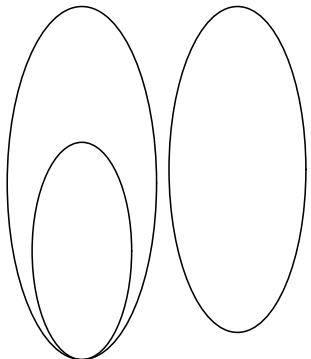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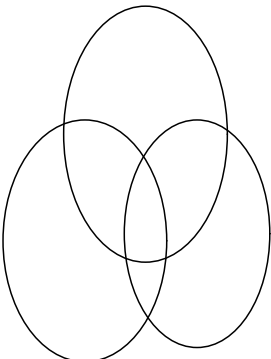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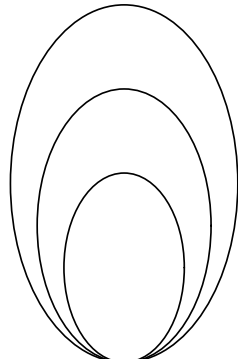
## 2) 정부간 관계이론과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변화

- Wright, Dunsire, Chandler 정부간 관계유형은 유사함. 이에 따라, 여기서는 Wright의 정부간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정부간 관계와 바람직한 지방감사체계를 설명하고자 함(조성호 외, 2008)
  - Wright는 정부간 관계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이 중에서 중첩권위모형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음
  
- 중첩권위모형은 지방과 중앙이 상호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임
  - 사실 중앙집권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권위모형은 지방자치 이념과 부합하기 힘들
  
- 대등권위모형 역시 국정의 통합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를 지님
  - 즉, 지방의 자율과 국가적 통합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이승종, 1996; 42).
  
- 이에 가까운 것은 3가지의 Wright의 모형 중에서 중첩권위모형임
  - 물론, 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은 연방체계의 정부간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일체계에의 적실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정부간 관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나 실질적인 처방책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함(김천영, 2001; 107-108).
  
- 그러나 연방체제에 있어 연방·주·지방의 3단계 구조와 단일체제에서의 중앙·지방의 2단계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없음(조성호 외, 2008)

- 연방에서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단일체제 하의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을 지방분권시대의 바람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고 상정할 때, 바람직한 지방감사체계의 정립에 대한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함(조성호 외, 2018)

<표 6> 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의 특성 비교

구 분	대등권위모형	중첩권위모형	포괄권위모형
상태	분리적	중첩적	포괄적
관계	독립적	상호의존적	종속적
권위	자치	협력	계층
사무분담	고유사무 주종 기관위임사무 전무	고유사무 강제 기관위임사무 약세	고유사무 약세 기관위임사무 주종
재정관계	완전 분리	상호의존성	완전 종속
인사관계	완전 분리	분리 및 상호 교류	완전 종속
모형			

자료: 최길수(2003; 135)에서 수정.

- 중첩권위모형을 토대로 바람직한 지방감사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첩권위모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적으로 사무분담 측면에서 지방은 고유사무가 강세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약세이며, 재정관계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며, 인사관계 측면에서 분리 및 상호교류를 전제로 함
  
-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의 바람직한 지방감사체계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지방감사보다는 지방정부의 감사역량을 제고하여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지방감사가 바람직함(조성호 외, 2008)
  - 즉, 사무분담 측면에서 고유사무의 강세 및 기관위임사무 약세와 재정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약간의 기관위임사무 내지 재정적인 부문에 제한적이어야 함(조성호 외, 2008)
  - 지방사무 및 재정에 대한 감사에 대한 대부분의 감사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됨(조성호 외, 2008)

### III.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 1.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

##### 1) 미국

- (외부감사)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음(조성호 외, 2008)
  
- 또한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동시에 지방정부에 재원을 공급했을 경우, 단일회계감사체제를 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복감사 및 과도한 감사의 발생을 차단함(조성호, 2006)
  
-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카운티에 대한 주정부의 감사시,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와 재무제표감사(financial statements audit)가 주로 이루어짐
  - 성과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당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최유성, 1999).
  
- (내부감사)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내부감사는 1999년에 제정된 내부통제법에 의해 내부감사를 실시함(안영훈, 2019)

- 내부감사(Internal audit)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체감사의 기준에 맞추어, 그 조직이 경영정책에 적절하게 순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조직 활동 전반과 내부통제의 효과성 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의 경영체계의 하나로 구성된 평가활동이다"(안영훈, 2019)

□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내부감사의 표준(Standard)은 국제자체감사인협회(IIA)의 기준임

- "각 자체감사기구(Internal audit)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체감사의 전문직 시행기준"인 자체감사 전문기준에 적합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영균, 2010)

<표 1> 뉴욕주 감사원의 내부감사 권고사항

□ 뉴욕주 감사원은 2004년 내부통제법에 따라서 주정부 행정기관 중 내부감사 기능을 필요로 하는 34개 지정기관에 대하여 내부감사제도의 운영실태(2001~2003)를 조사(이영균,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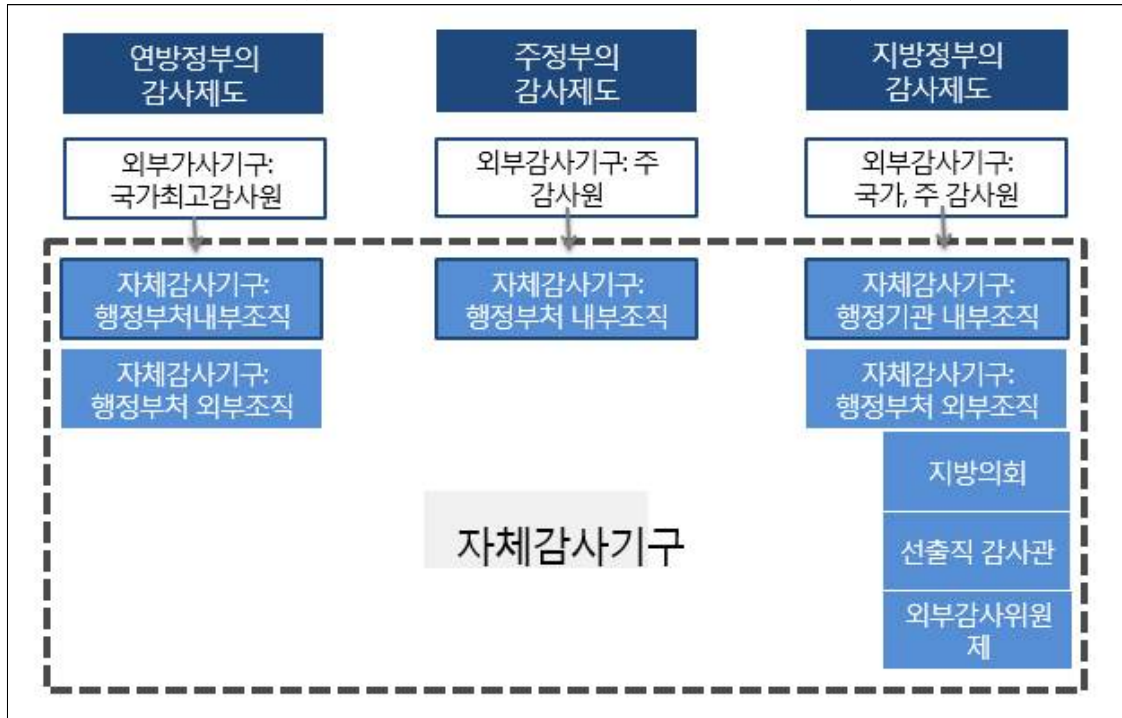
□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뉴욕주 감사원의 권고사항

- 각 행정기관은 그 기관에 적절한 판단에 따라서, 법규정과 국제기준에 맞는 내부감사기구를 구성, 운영하되 최소한 자체감사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내부감사 책임자로 임명하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감사연구원, 2009)
-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감사인으로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자체감사 인력의 감사 기능을 존중하도록 한다(감사연구원, 2009). 내부감사인력에 대해서 조직내부에서는 내부감사 임무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여타의 조직 임무를 이들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감사연구원, 2009)

자료 : 안영훈(2009),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중앙정부 자체감사의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내부감사는 주로 지방의회, 선출직 감사관, 외부감사위원제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림 3> 미국 연방-주정부-지방정부 감사제도



자료 : 안영훈(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의정포럼 자료집」, 경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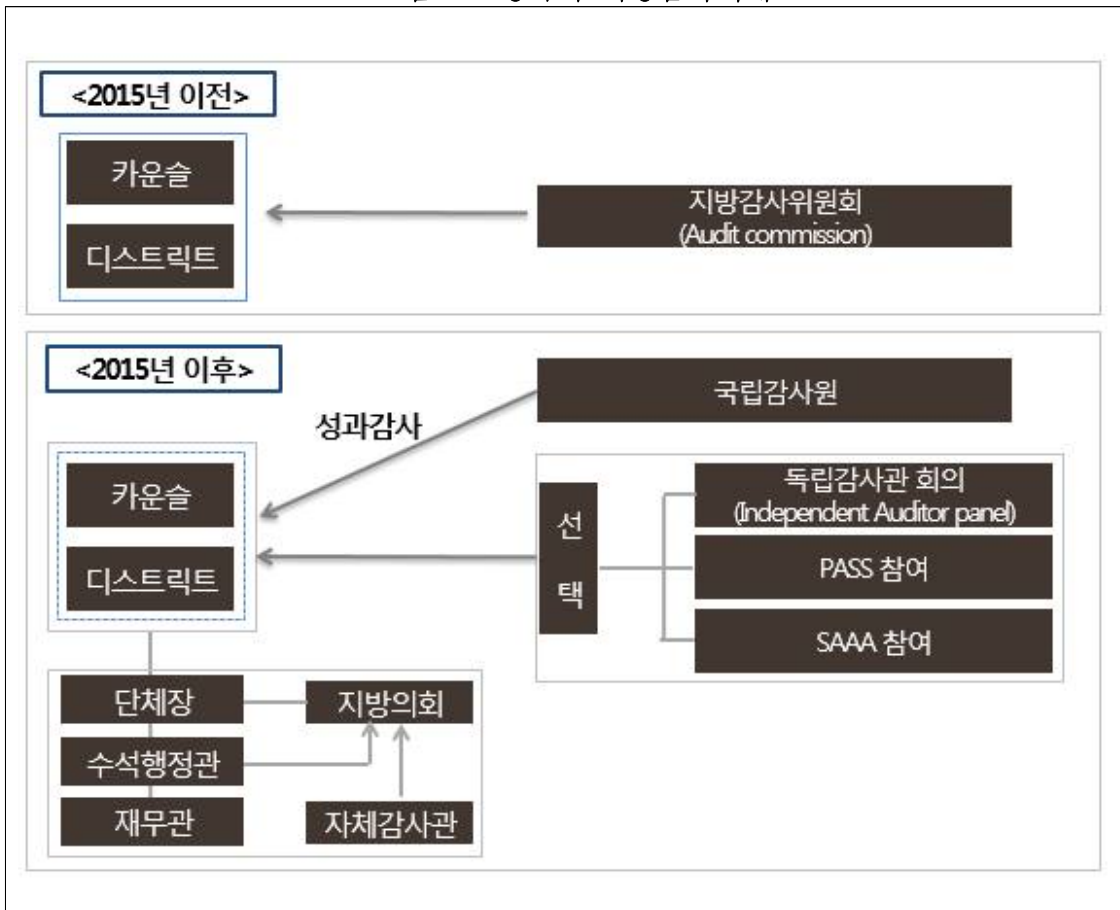
## 2) 영국

- (외부감사) 영국은 1983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감사를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 담당함
  -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직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함(조성호, 2006)
  - 또한 중앙부처도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회계감사의 경우, 지방정부는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감사원(District Audit)의 감사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의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음(조성호외, 2008)
  - 감사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 수수료를 받아 재정을 충당함(김민영, 2001)
  
- 감사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의 합법성 감사보다는 효과성 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김민영, 2001)
  - 특히, 감사위원회는 돈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감찰, 최고 가치(best value), 성과감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김민영, 2001)
  
-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위압적 감시·감독의 기능보다는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시정권고와 지원기능을 더 우선시함
  
-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지방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5년 3월 지방감사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지방감사체계가 도입됨(Sanford, 2016)
  - 지방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감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반면에, 감사위원회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감사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나타나지 못하여,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됨(문태곤, 2008)

- 지방감사위원회 폐지이후, 지방정부는 독립감사관회의, PSAA 혹은 SAAA에 의뢰하여 외부감사인을 임명하여 감사를 받게되었음(양지숙, 2018)

<그림 4> 영국의 지방감사체계



자료 : 양지숙(2018)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

- PSAA(Public Sector Audit Appointments Ltd) : 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2016년부터 지방정부의 감사인 임명을 집합적으로 수행함
- SAAA(Smaller Authorities' Audit Appointments Ltd) : 소규모 지방정부의 감사인 임명을 수행하는 법인임
- 수입 및 지출이 25,000 파운드 이하의 지방정부의 경우, 정기적인 외부감

사 의무가 면제되며, 국가가 설정한 투명성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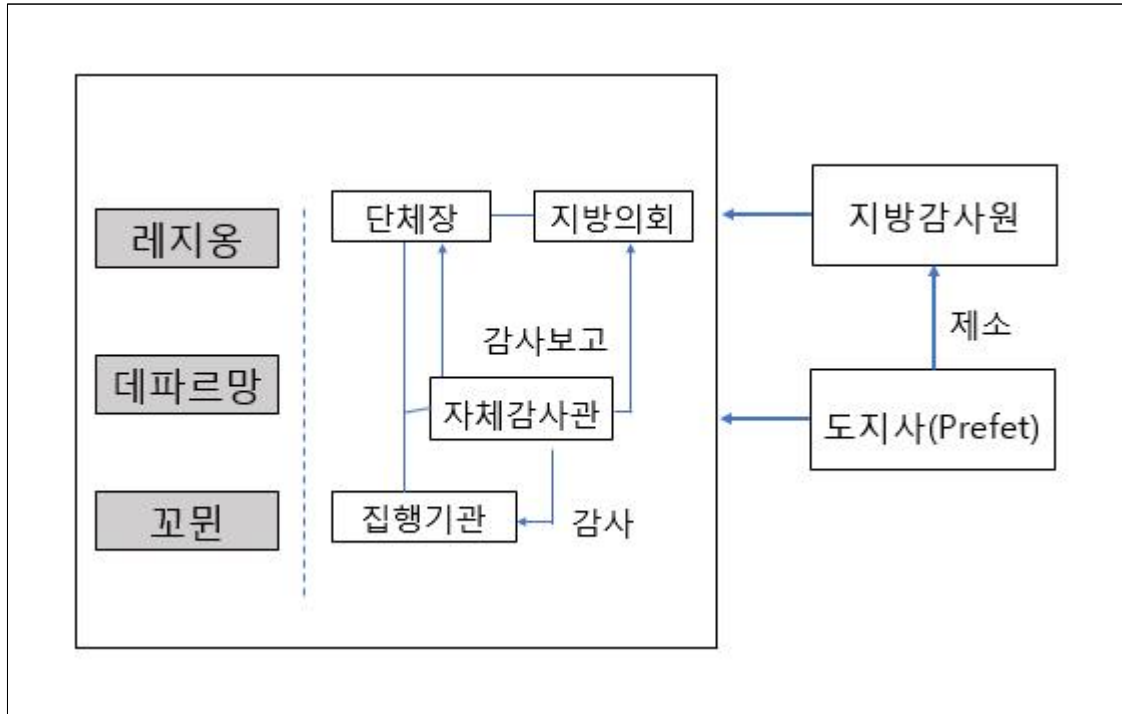
- (내부감사) 각 지방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석행정관, 재정 담당국장, 재무관리관 등이 재정·회계를 책임지고(양지숙, 2018) 수석행정관이 지명한 자체감사관이 내부감사를 수행함
- 그리고 수석행정관은 재정·회계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자체감사관도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함

### 3) 프랑스

- (외부감사) 1982년까지는 중앙감사원이 지방정부 공공회계관이 작성한 모든 회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 그러나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사전통제가 폐지되고 사후통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의 지방분실격인 ‘지방감사원’이 설치됨(조성호, 2006)
  - 기구인력은 원장(판사), 공공검찰관, 감사관, 외부보고 직원, 감사지원 인력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됨
  - 지방감사원장은 중앙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 지방감사원은 사법적 회계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의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 4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함.
  - 지방감사원의 성과감사는 도입기로서 미국, 영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

타남(조성호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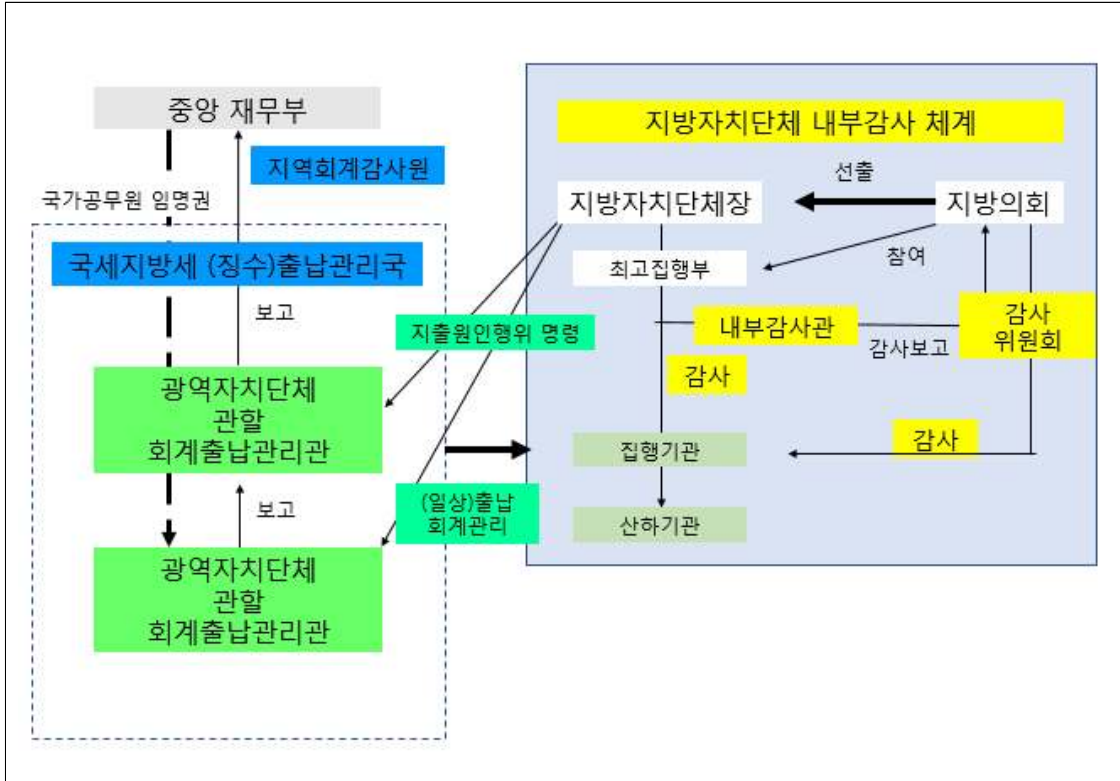
<그림 5> 프랑스의 지방감사체계



자료 : 양지숙(2018)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

- (내부감사) 지방정부에 대한 내부감사는 지방정부의 내부 감사관에 의한 감사와 지방의회에 의한 자체감사가 존재함
- 내부감사관은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과 시민에 공시하며, 지방정부의 장은 후속처리위원회 활동의 지시, 사법조치, 내부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지방의회는 내부감사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집행기관과 산하기관에 자체감사를 수행하기도 함

<그림 6> 프랑스의 내부감사체계



자료 : 안영훈(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의정포럼 자료집」, 경기연구원.

#### 4) 일본

□ (외부감사) 첫째, 일본의 외부감사체계는 회계검사원감사, 총무성 행정평가국 행정감사, 각 성청별 감사 등 중앙감사가 형식상 다수 잔존하고 있음

- 회계검사원은 지방의 일반 업무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에서 재정원조를 하는 회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조성호, 2006).
- 중앙성청에 의한 합동감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중앙성청과 특히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만을 평가·감사함 → 지자체 감사의 의미보다는 업무지원의 성격이 강함(조성호, 2006).

- 또한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중앙성청에 의한 관여를 유형화하여 일반원칙을 정립하고 관여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음(조성호, 2006)
  
- 국회에 의한 감사권은 없고, 국정조사권만 있으나 이를 사용한 실례는 없음
  
- 둘째, 외부감사인제도의 경우 일본의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대응하고, 자치단체들의 부정지출행위를 적발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며, 감사위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1997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과 함께 도입됨(양지숙, 2018)
  - 기존 감사위원제도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부전문가와 계약을 체결(강길훈, 2015)하는 것으로, 이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속 3회까지 가능함
  - 외부감사인인 경우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재무관리, 사업경영 관리, 기타 행정 운영에 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가진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함(지방자치법 제252조의28; 강길훈, 2015)
  - 또한 감사위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음(총무성, 2017).
  
- 셋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일본 지방자치법 제75조에 근거한 직접청구감사와 동법 제242조에 근거하는 주민감사청구로 구분됨

- 직접청구감사의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함(강길훈, 2015)
-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 이상이 집행기관 또는 지방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나 태만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예방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로서 감사위원회제도가 있으며, 일종의 내부통제 장치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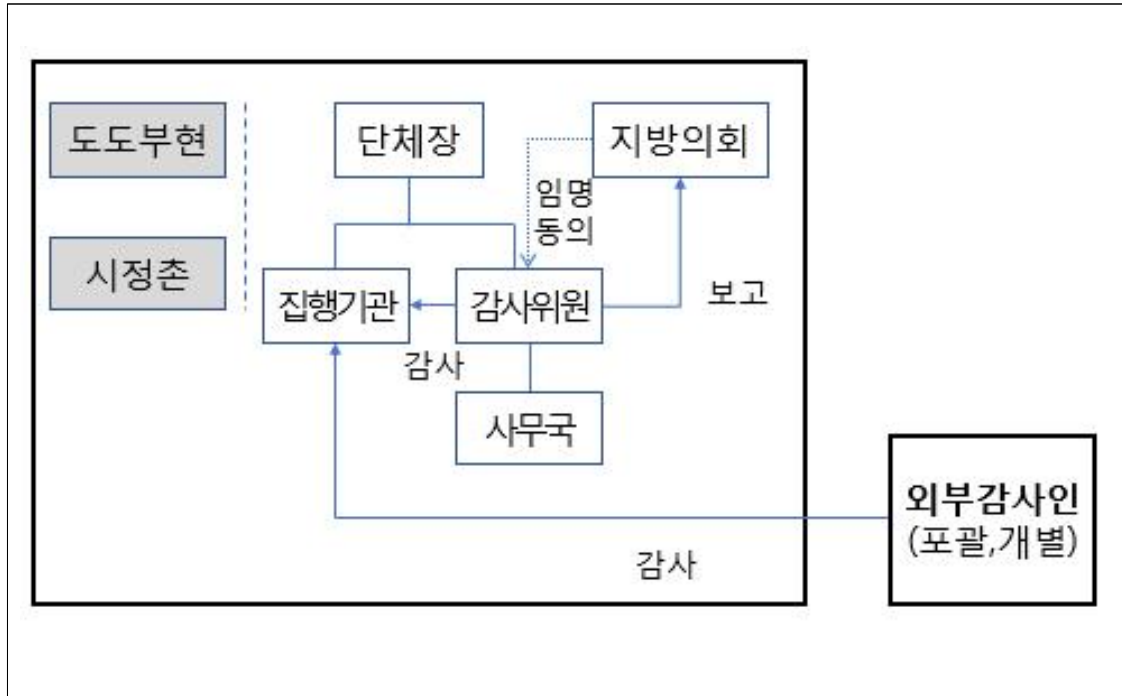
<표 7>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제도 개요

구분	내용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
정수	◆ 도도부현 및 정령으로 정하는 인구 25만 이상의 시는 4명, 그 외의 시정촌은 2명이며, 조례에 의하여 증가가 가능함(지방자치법 제195조 제2항; 자치령 제140조의2; 강길훈, 2015)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식견위원과 의선위원 임명(강길훈, 2015)</li> <li>◆ 감사위원 수의 절반, 즉 도도부현과 정령으로 정하는 인구 25만 이상의 시의 경우 2명, 그 외의 시정촌의 경우 1명을 의회 의원으로 선임하되, 감사위원의 수가 정한 수를 넘을 경우 추가되는 감사위원은 식견을 가진 자로 선임(지방자치법 제196조 제1항; 강길훈 2015)</li> <li>◆ 다만, 식견을 가진 감사위원 중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 포함 불가(지방자치법 제197조; 강길훈, 2015)</li> </ul>
임기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의 임기는 식견위원의 경우 4년 의원위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에 따르며, 종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 수행(지방자치법 제197조)</li> <li>◆ 감사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파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98조; 강길훈, 2015)</li> <li>◆ .감사위원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장의 승인 필요(지방자치법 제198조; 강길훈, 2015)</li> </ul>

자료 : 양지숙(2015).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 일본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에서 보통자치단체는 특별집행기관으로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양지숙, 2015)
  - 감사위원의 경우, 행정조직의 일부로 내부감사기구에 해당하지만, 단체장이나 의회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감사의 성격도 존재함(심호, 2013; 안영훈 하동현)
  - 감사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재무관리 등 자치단체 업무에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선임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강길훈, 2015)
- 감사위원이 수행하는 감사업무는 재무감사, 행정감사, 재정원조단체 등 감사, 지정금융기관 등 감사, 결산심사, 월례출납검사, 기금운용심사, 건전화판단비율심사, 직접청구감사, 주민감사청구, 단체장요구감사, 의회청구감사, 직원배상책임감사가 있음
- 새롭게 단체장이 작성한 내부통제평가보고서 심사와 의회의결에 따른 배상책임면제 의견에 관한 업무가 있음(총무성, 2017)
- 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방공공단체와 관계되는 외부인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의회, 단체장, 관계 집행기관에 제출하며,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의회, 단체장, 그 외의 집행기관은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치함(강길훈, 2015)
  - 이때 조치한 내용을 감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감사위원은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함(심호, 2013)

<그림 7> 일본의 지방감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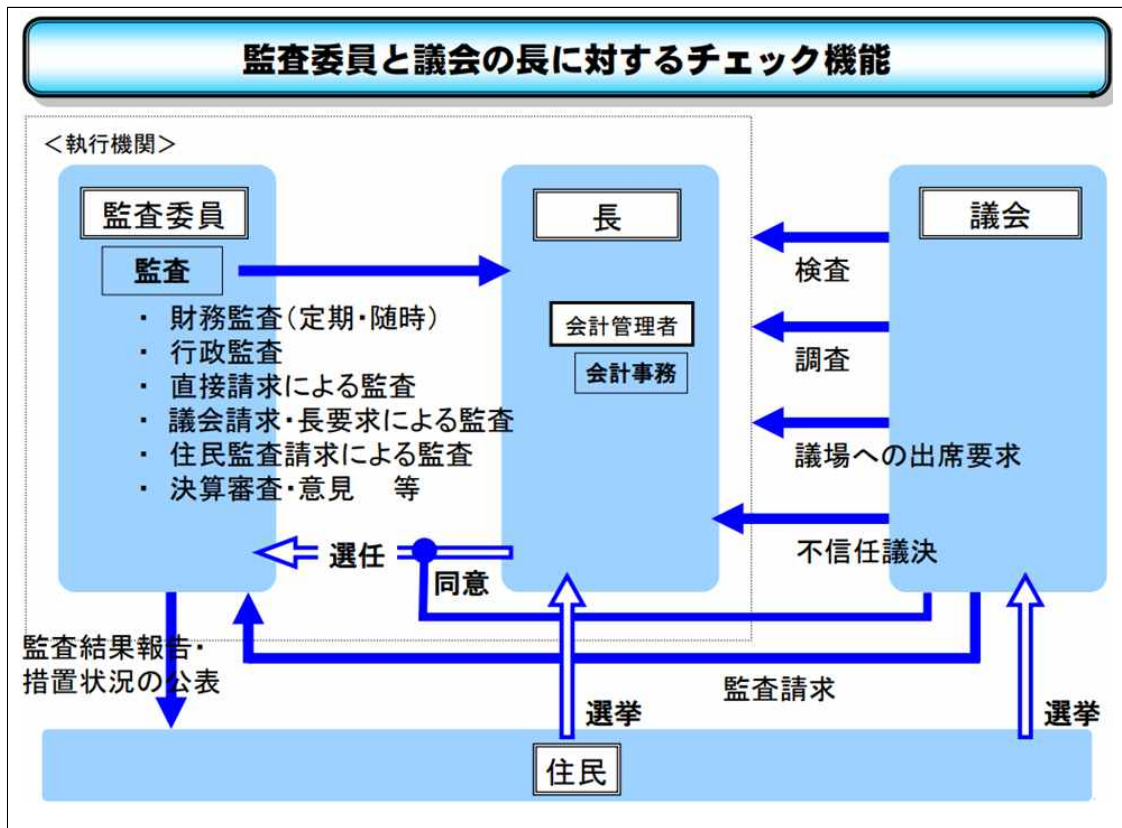
자료 : 양지숙(2018)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

- 위의 일본의 지방감사체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의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의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장과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여전히 집행기관에서 순환 보직으로 발령을 받고 있어 운영상 독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조규범, 2018)

## □ 일본 지방의회의 감사위원회 관여

-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사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조례로 의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가 있음
- 해당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겸직 가능; 자치단체의 상근직원, 중의원 참의원, 검찰, 경찰, 세무공무원, 자치단체 공안위원회 위원 등은 겸직 불가
- 해당 감사위원은 감사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의회, 자치단체장,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 공안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하고 공표해야 함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선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회는 집행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음

<그림 8> 일본의 감사위원과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



자료 : 総務省 「現行の地方公共団体の監査機能について」 (2020.08.29. 검색. [soumu.go.jp](http://soumu.go.jp))

## 2.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전략적 시사점

### 1)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비교

- (미국) i) 외부감사의 경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일정 규모(5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조성호 외, 2008)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단일감사체제를 도입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동시에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있음
-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감사시, 성과감사와 재무제표감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내부감사는 주로 지방의회, 선출직 감사관, 외부감사위원제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영국) 지방정부는 독립감사관회의, PSAA 혹은 SAAA에 의뢰하여 외부감사인인 임명하여 감사를 받음
  - PSAA(Public Sector Audit Appointments Ltd) : 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2016년부터 지방정부의 감사인 임명을 집합적으로 수행함
  - SAAA(Smaller Authorities' Audit Appointments Ltd) : 소규모 지방정부의 감사인 임명을 수행하는 법인임
- 그리고 내부감사의 경우, 지방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석행정관, 재정담당국장, 재무관리관 등이 재정·회계를 책임지고, 수석행정관이 지명한 자체감사관이 내부감사를 수행함(조규범, 2016)

- (프랑스) 지방감사원은 사법적 회계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의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 4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함(송재구, 2001)
-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내부감사는 지방정부의 내부 감사관에 의한 감사와 지방의회에 의한 자체감사가 존재함
- (일본) 외부감사는 회계검사원감사, 총무성 행정평가국 행정감사, 각 성청별 감사 등 중앙감사가 형식상 다수 존재하나, 회계검사원의 회계감사가 특정한 경우에 이루어짐(조성호 외, 2006)
  - 회계검사원은 중앙에서 재정원조를 하는 회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함
- 외부감사인제도의 경우, 자치단체들의 부정지출행위를 적발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며, 감사위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1997년에 도입됨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직접청구감사와 주민감사청구로 구분됨
- 내부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로서 감사위원제도가 있음

<표 8> 주요 국가의 지방감사제도의 비교

구분	외부감사	내부감사
미국	1. 연방 또는 주정부 감사 (30만\$ 이상 보조금 혹은 지원금 수령의 경우만 감사) 2. 단일감사체제를 도입하여 연방 또는 주정부의 중복감사 배제	1. 선출직 감사관 2. 외부감사위원회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 3. 지방의회 행정감사
영국	1. 독립감사관회의 2. PSAA 3. SAAA	1. 자체감사관 2. 지방의회 행정감사
구분	외부감사	내부감사
프랑스	1. 지역 감사원 - 회계감사 (매 4년 주기 종합감사)	1. 자체감사관 2. 지방의회 행정감사
일본	1. 회계검사원(중앙에서 재정원조하는 회계사무만 대상), 총무성 행정평가국 및 각 성청별 전문분야별 감사, 국회국정조사(실제 사용한 경우 없음) 2.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3.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위원 - 회계감사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 선임가능함) 2. 지방의회 행정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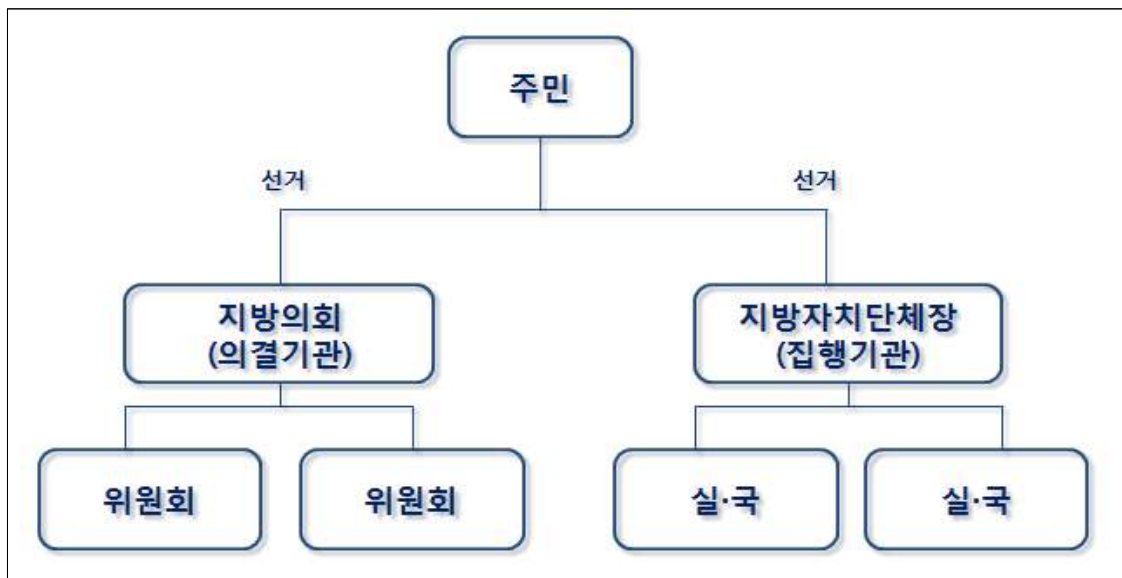
## 2)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 우리나라는 1949년 제헌 헌법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를 일괄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은 선거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지방의원들을 선거로 뽑는 제도로써, 양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을 최우선 목표로 함(조성호 외, 2017)
- 즉,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은 주로 대통령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는 전문성을 부여하고, 의결기관에게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부여함으로써 양 기관의 단점을 보완함(김병준, 2011)

<그림 9>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의 기본모형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와 제6장 집행기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의 우위가 있는 강단체장-의회형의 기관분리형 기관구성을 실시하고 있음(조성호, 2017)

- 강단체장-의회형의 경우,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권·인사권·예산권 등 집행에 쓰이는 중요한 기능 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의결기관에 비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조성호, 2016).

□ 구체적으로 강단체장-의회형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동일하게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위를 확보하지만,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 및 집행하는 권한을 가짐(지방자치법 제11조; 조성호 외, 2017)

- 자치단체장은 광범위한 직원임명권을 갖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짐(조성호 외, 2017)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등 소속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13-116조), 하부행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짐(조성호 외, 2017). 그리고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개진하는 기회, 의회 의결사항의 재의요구권, 예산편성권 등을 가짐(조성호 외, 2017)

□ 반면에,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비해 직원의 인사, 정책형성, 집행 등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취약한 실정임(조성호, 2017)

- 지방의회는 정책형성에 대한 권한이 미약하고, 인사상으로 의장의 추천권이 인정되지만, 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있음
- 그리고 의회는 조례 제정권,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 승인, 행정감사와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조성호, 2016)

□ 이러한 우리나라의 강단체장-의회형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차용해 도입한 것임

-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건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기관분리형으로서 일본과 미국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관통합형으로 상이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지방정부 감사사례를 검토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출직 감사관(독임제), 외부 감사위원회 등을 채택하는 등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IV.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 1.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 배경

- 일반적으로 감사사무의 처리에 있어 능률성이나 신속성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운영함(감사원, 2014)
  
- 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는 자치분권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권한이 위임되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자치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됨(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1)
  
  -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는 지방의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감사 방법이 미숙함(송동수, 2008, 표명환, 2010)
  
  - 『자체감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7.7.26. 개정)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직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며, 감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 현행 자체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감사법에 근거함

### <표 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131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실시

## <표 10> 세종시법과 제주특별법

### 세종시법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3.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 1)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설치 현황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총 8개가 있음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i)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ii) 자체 감사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 확보, iii)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설치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i) 「공공감사법」 제5조 및 제6조, ii) 「지방자치법」 제116조, 171조를 법적 근거로 바탕으로 설치함

□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이지만, 독립성 규정을 두어 직무상 독립되었음

- 위원장의 직급은 서울과 세종이 2급으로 구성되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가 3급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 1명과 비상임인 위원 6명으로 구성됨

##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7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및 제6조, ii) 「지방자치법」 제116조, iii)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 iv)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을 비롯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2급(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시장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적임

<그림 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org.seoul.go.kr>)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4담당관(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23팀이며, 인력은 총 127명임

<표 1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li> <li>•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li> <li>•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li> <li>•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li> <li>• 적극 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li> <li>• 청렴시책 관련 업무</li> <li>•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li> <li>•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li> <li>•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li> <li>• 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감사위원회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공공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li> <li>•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li> <li>•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li> <li>•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li> <li>•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li> </ul>
안전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li> <li>•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li> <li>•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li> <li>•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li> <li>•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li> <li>•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li> <li>•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li> <li>•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조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사항의 조사·처리</li> <li>•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li> <li>•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li> <li>•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li> <li>•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li> <li>•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li> <li>•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li> <li>• 공무원,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li> </ul>

## □ 서울특별시시의회의 감사위원회 관여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감사위원 2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어 있음
- 감사위원장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는 부재
- 시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아래 각호 사항을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1.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 결과

## (2)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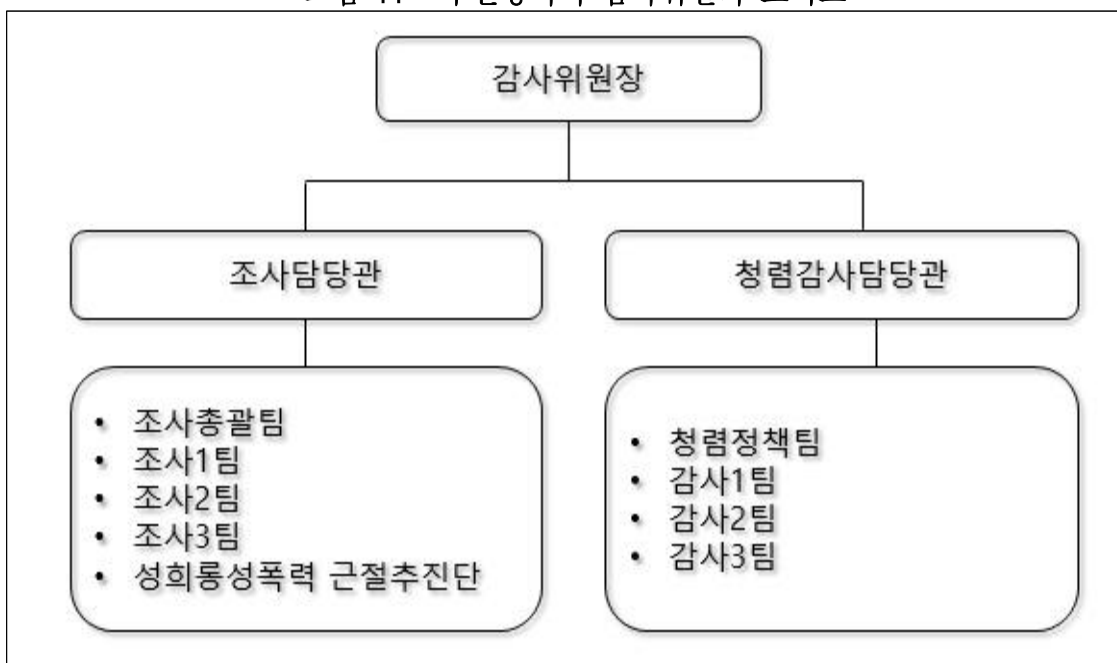
- 「공공감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장 소속임(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2담당관(조사담당관 청렴 감사담당관) 8팀이며, 인력은 총 115명임

<그림 1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표 12>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조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취약분야 특정감사 총괄에 관한 사항</li> <li>• 감사결과 처분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li> <li>• 조사담당관 소관 징계 의결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의·소청심사에 관한 사항</li> <li>•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li> <li>•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대행에 관한 사항</li> <li>•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지시사항, 비위정보,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처리</li> <li>•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청원 조사</li> <li>•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방보조금 관련 감사·조사 총괄 및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li> <li>•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사항</li> <li>•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li> <li>• 기술조사, 안전분야 감찰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li> <li>•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국민고충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시분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 직원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실태 점검·조사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사건 조사 및 예방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원, 중앙부처 소관 사무(조사분야)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그 밖에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청렴 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부패방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에 관한 사항</li> <li>•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 재산등록·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구·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청렴감사담당관 소관 징계 의결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의·소청심사에 관한 사항</li> <li>•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li> <li>•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li> <li>• 물품·공사·용역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원가계산 정보수집 및 원가계산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 시정저해분야, 대형공사 등 감찰에 관한 사항</li> <li>• 기술감사 및 대형공사 등 시공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감사분야)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 □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관여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감사위원 2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어 있음
- 감사위원장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동의 절차 부재
- 시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반기별로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3)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12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ii) 「지방자치법」 제171조, iii) 「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됨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을 비롯하여 상임 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장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적임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7담당관제 이며, 인력은 총 42명임

<그림 12>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표 13>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청렴기획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조정</li> <li>• 이달·올해의 공무원 선정</li> <li>•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운영</li> <li>• 반부패·청렴행정 종합대책, 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 공무원행동강령</li> <li>• 예산, 지출, 회계, 서무 업무</li> <li>•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li> </ul>
자체감사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감사 추진</li> <li>• 행정안전부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li> </ul>
자체감사2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li> <li>• 공공기관 채용분야 감사 및 공공기관 중앙부처 감사지원</li> <li>• 감사원 업무 지원 등</li> </ul>
자체감사3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감사</li> <li>• 사업소(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감사</li> <li>• 대형공사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li> </ul>
사회복지·보조금감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감사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지시설(보조금 등) 감사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감사 등에 관한 사항</li> </ul>
예방감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포함)에 관한 사항 등</li> <li>•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li> </ul>
계약심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용역·물품 원가심사,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li> <li>•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li> </ul>
공직감찰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공무원 비위 및 특명조사업무</li> <li>•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처리, 공무원 징계 관련 업무</li> <li>•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종합관리, 행정안전부 조사업무 지원 등</li> </ul>

## □ 광주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관여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2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어 있음
- 감사위원장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동의 절차 부재
- 시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광주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 부재

#### (4) 대전시 감사위원회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ii)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을 비롯하여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장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적임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7팀제 이며, 인력은 총 44명임

<그림 13>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https://www.daejeon.go.kr/>)

<표 14>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감사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감사(총괄)</li> <li>- 자치구(5), 사업소(상수도, 건설본부), 공기업(4), 테크노파크</li> <li>- 시 본청 및 의회 사무처 감사</li> <li>• 정부 합동감사 및 행정자치부 업무총괄</li> <li>• 국정감사 및 지방의회 관련 업무</li> <li>• 주요 업무계획 및 각종 업무보고</li> <li>• 주민감사청구, 시민 옴부즈만</li> <li>• 감사관실 소관 BSC 성과관리 및 평가</li> </ul>
청렴 윤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반부패 · 청렴업무 전반 (권익위 소관 중 공직윤리 · 청렴분야)</li> <li>• 청렴공무원 선발</li> <li>•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 수행</li> <li>•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전반</li> <li>• 청렴도 및 반부패시책 평가 수행</li> </ul>
회계 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감사</li> <li>- 직속기관 (소방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li> <li>- 사업소 (오정, 노은농수산물시장, 연정국악원,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미술관, 서울 사무소, 시립박물관, 평생교육문화센터, 문화예술의전당, 한밭도서관)</li> <li>- 출자 · 출연기관 (대전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문화 재단, 국제통상진흥원, 고암문화재단)</li> <li>• 감사원 감사 및 지원업무</li> <li>• 일상감사 총괄(계약, 예산, 금고, 인사, 공무국외여행, 워크숍, 보조금, 민간위탁)</li> <l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업무</li> <li>• 자체 감사활동 실적 평가 수행</li> </ul>
기술 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분야 종합감사</li> <li>- 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li> <li>• 일상감사(특허, 신기술, 심사, 턴키, PQ 등)</li> <li>• 현장감사</li> <li>• 시정환경 순찰</li> <li>• 기술분야 특명사항</li> </ul>
보조금 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분야 특정·현장 감사</li> <li>• 보조·출연기관 종합감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평생교육진흥원, 복지재단)</li> <li>•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홍보</li> <li>•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발굴</li> <li>• 자체감사 지원</li> </ul>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비리, 복무기강 감찰(행자부 조사담당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지원)</li> <li>• 검 · 경 통보 공직비위 사항 등</li> <li>• 진정 · 고충 · 이송 등 민원조사 및 처분(권익위 조사민원 포함)</li> <li>• 특정감사(특명사항)</li> <li>• 공직감찰역량 평가 수행</li> </ul>
계약 심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 심사</li> <li>• 용역계약 심사</li> <li>• 물품구매 등 계약심사</li> <li>• 설계변경 심사</li> <li>• 일상감사(토목, 기계, 건축, 조경, 환경, 정보통신, 전산, 전기, 용역)</li> <li>• 계약심사제도 운영성과평가 수행</li> </ul>

□ 대전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관여

- 대전광역시의회 감사위원 추천 절차 부재
- 감사위원장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동의 절차 부재
- 시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대전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 부재

## (5)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1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ii) 「세종 특별법」 제21조, iii)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31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 상당(지방정무직)이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최대 1년 연장 가능)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적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1국 6 담당제이며, 인력은 총 28명임

<그림 1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표 15>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li> <li>•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등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감사위원회 의사 운영</li> <li>• 시민감사관제 운영/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계약심사(교육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지원/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시 분청·의회사무처·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특정분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감사</li> <li>• 시장에 자치감사 결과보고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 통보 등 자치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리/ 감사결과 공개</li> <li>•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등</li> <li>•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 및 학교법(대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li> <li>• 공직 비위(언론보도사항을 포함한다) 조사/공직기강 기동감찰 운영 및 복무감사</li> <li>• 감사위원회 접수 민원사항 조사처리/</li> <li>• 감사원 등 외부기관 조사 지원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li> <li>• 다수인민원 처리상황 분석·확인/ 검·경 등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처리</li> <li>• 공직자·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시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li> <li>•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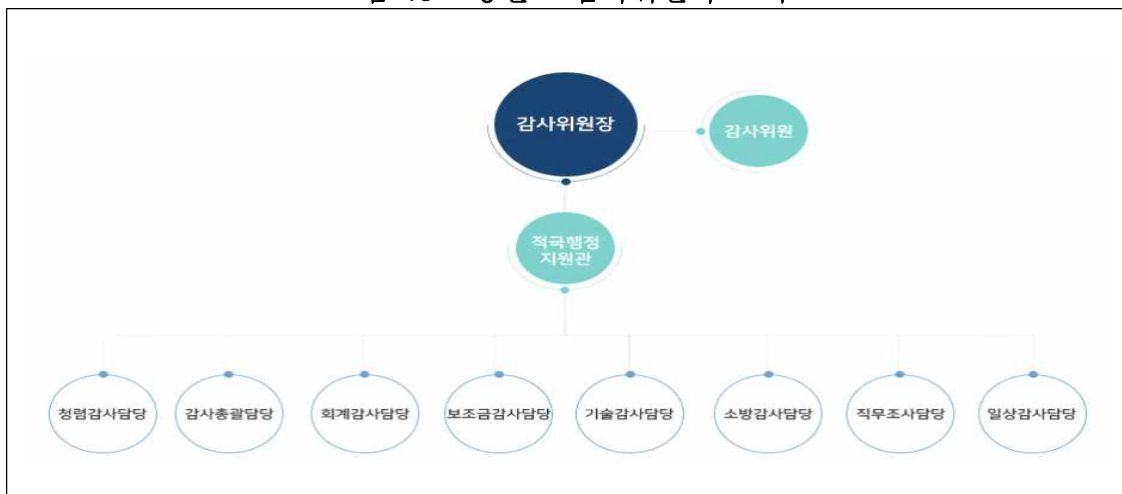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감사위원회 관여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감사위원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게 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함;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감사위원 면직 해촉시 감사위원장의 경우 시의회 동의
- 시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 부재

## (6) 강원도 감사위원회

-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제6조, ii) 「동법시행령」 제4조, iii)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적임
  
- 강원도 감사위원회 부서편

<그림 15>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표 16> 강원도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청렴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결과 처분사항 심의·재심의/감사조정심의회 운영</li> <li>•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업무</li> <li>•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마일리지제 운영</li> <li>•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탁금지법 관련업무</li> <li>•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li> <li>•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확인·평가</li> <li>• 자율적 내부통제, BSC성과관리</li> <li>• 그 밖에 위원회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감사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감사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li> <li>• 종합감사운영 총괄 관리</li> <li>• 감사관련 주요사안 검토처리</li> <li>• 시군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및 이행결과 확인</li> <li>• 취약분야 등 정책기획 특정감사</li> <li>• 적극행정면책심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 운영</li> <li>•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 수감지원 및 이행결과 관리</li> <li>•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 평가</li> <li>• 소방관서 정기종합감사</li> </ul>
회계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분야 시군 종합감사</li> <li>• 도 분청·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공기업 포함) 재무감사</li> <li>• 재산관리분야 특정감사</li> <li>•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li> <li>•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업무</li> <li>• 청백-e 시스템 관리 및 운영</li> <li>• 강원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li> </ul>
보조금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분야 종합감사</li> <li>• 보조금분야 특정감사</li> <li>• 보조사업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li> <li>• 그 밖에 보조금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li> </ul>
기술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시공 등에 관한 기술분야 종합감사</li> <li>• 건설행정 취약분야 등의 특정감사</li> <li>• 도 자체시행 공사 등에 대한 감사</li> </ul>
소방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li> <li>•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li> <li>• 민원분야(소방건축동의, 위험물 허가) 특정감사</li> <li>• 소방분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li> <li>•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고위공직자 병역신고, 퇴직자 취업,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등</li> </ul>
직무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청구민원 조사 및 처리</li> <li>• 민원감사, 공직감찰, 비위·범죄발생 공무원 조사·처리</li> <li>• 언론보도(특정사항, 민원) 사항 처리</li> <li>• 도민감사관제 추진</li> <li>• 특정분야(농축어업, 산림, 보건, 환경 등) 종합감사 및 조사 지원</li> <li>•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사 등</li> </ul>
일상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 총괄</li> <li>• 도 분청 특정·성과 감사</li> <li>• 주요정책,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일상감사</li> <li>• 공사, 용역, 물품계약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li> <li>• 그 밖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li> </ul>

## □ 강원도의회 감사위원회 관여

-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게 함
- 감사위원장에 대한 강원도의회 동의 절차 부재
- 도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강원도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 부재

## (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 7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 정실현을 위하여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됨

- i) 「공공감사법」 제5조, ii) 「지방자치법」 제116조, iii) 「충청남도 감 사위원회 회의운영규정」, iv)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66조 에 근거하여 설치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명을 비롯하여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의 직급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 만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직 무상으로 독립적임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부서편제는 2 과 9 팀제이며, 인력은 총 47명임

<그림 1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자료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표 1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부서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감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정책 수립</li> <li>• 감사계획 수립</li> <li>• 각종(종합, 재무, 특정, 성과, 복무) 감사시행 및 처분</li> <li>• 감사심사 분석</li> <li>• 감사 통계 및 징계 등 처분자요구자 사후관리</li> <li>•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운영</li> <li>• 책임감사관제 운영</li> <li>• 컨설팅 감사 추진</li> <li>•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li> <li>•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li> <li>•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li> <li>• 공공기관 청렴도에 관한 사항</li> <li>•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li> <li>• 공직윤리제도(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운영</li> <li>• 청백-e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li> <li>•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li> <li>• 도민감사관제 운영</li> <li>• 국정감사 및 도의회 관련 사항</li> <li>• 그 밖에 감사행정에 관한 사항</li> </ul>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명사항 처리 및 공직기강 감찰 추진</li> <li>• 검·경 통보사항 처리</li> <li>•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li> <li>• 각종 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li> <li>• 계약심사제도 운영</li> <li>• 일상감사제도 운영</li> <li>•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li> <li>• 공동주택관리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li> <li>•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li> <li>•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li> <li>•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및 관리</li> <li>• 그 밖에 조사행정에 관한 사항</li> </ul>

□ 충청남도의회의 감사위원회 관여

- 충청남도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절차 부재
- 감사위원장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동의 절차 부재
- 도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
- 충청남도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 부재

## **(8) 국내 감사위원회에 관한 소결**

-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이지만, 독립성 규정을 두어 직무상 독립되었음
  - 위원장의 직급은 서울과 세종이 2급으로 구성되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가 3급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 1명과 비상임인 위원 6명으로 구성됨

## **2)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수준**

- 광역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 대한 시도의회회의의 책임성 수준은 크게 의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가, 위원(위원장) 선임(위촉) 및 해임(해촉)에 대해 동의권이 있는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혹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는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함
  - 8개 감사위원회 중 대전, 충남을 제외한 6개 시도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해당 시도의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추천 관여 비율은 75% 수준
  - 8개 감사위원회 중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해당 시도의회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다른 6개 시도 감사위원장 임명에 시도의회회의 동의권한이 없어 관여 비율은 25% 수준
  - 8개 감사위원회 모두 지방의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로 금지 비율은 100%
  - 8개 감사위원회 중 서울, 부산만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6개 시도 감사위원회에는 보고 규정이 없어 의회의 관여 비율은 25% 수준

<표 18> 감사위원회별 지방의회 책임성

책임성수준 시·도	의회 추천	의회 동의	의원 겸직 금지	의회 보고	시·도별 평균
서울	1	0	1	1	75%
부산	1	0	1	1	75%
광주	1	0	1	0	50%
대전	0	0	1	0	25%
세종	1	1	1	0	75%
강원	1	0	1	0	50%
충남	0	0	1	0	25%
제주	1	1	1	0	75%
8개 시·도 평균	75%	25%	100%	25%	56.25%

□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제주, 세종 모두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다른 시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모두가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하고 있음<sup>3)</sup>
- 상위법에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제주와 세종 모두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4)</sup>

□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서울/부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세종/제주 감사위원회는 의회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3)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대표)이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해당 의회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4) 서울과 부산은 조례에 보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 지방자치법도 다양한 형태의 보고와 함께 환류 조치를 두고 있음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원도	충남
설치 목적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실현
설치 연월	2015년 7월	2019년 10월	2015년 12월	2019년 2월	2006년 7월	2015년 1월	2018년 9월	2011년 7월
설치 근거	「공공감사법」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19조	「공공감사법」 제5조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71조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공공감사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9조	「공공감사법」 제5조 「세종특별법」 제21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31조	「공공감사법」 제5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66조
소속	시장 소속	시장 소속	시장 소속	시장 소속	도지사 소속	시장 소속	도지사 소속	도지사 소속
독립성 규정	직무상 독립	-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의회 추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주특별법」 감사위원 3명은	「세종시법」 감사위원 2명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원도	충남
	관한 조례」 감사위원 2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관한 조례」 감사위원 2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조례」 비상임위원 2명을 시议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	관한 조례」 감사위원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의회 동의					「제주특별법」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로 도지사가 임명  「제주특별법」 감사위원 면직 해촉시 감사위원장의 경우 도의회 동의	「세종시법」 감사위원장은 시의회 동의로 시장 임명  「세종특별자치 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 면직 해촉시 감사위원장의 경우 시의회 동의		
의원 겸직 금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제주특별법」 감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으로 선출된 경우  「제주특별자치 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세종특별자치 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원도	충남
					운영에 관한 조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의회 보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은 아래 각호 사항을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 결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위원장 직급	2급(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3급(지방부이사관-)	2급 상당(지방정무직)	3급 상당(지방 정부직)	3급 상당(지방부이사관)	3급(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위원회	7명	7명	7명	7명	7명	7명	7명,	7명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원도	충남
구성	위원장(상임)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위원장(상임)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위원장(상임)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위원장(상임) 1명, 비상임위원 6명	위원장(상임)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위원 임기	3년, 연임불가	2년, 1회 연임	2년, 5년의 범위내에서연장	2년	3년	2년	위원장 2년 최대1년 연장, 위원2년 1회연임	2년, 5년 범위내에서연장
부서 편제 (17.9. 기준)	4담당관 23팀	2담당	7담당	7팀	3과 9팀 1센터	1국 6담당	8담당	2과 9팀
감사 인력 (19.9. 기준)	127명	115명	39명	44명	56명	26명	44명	47명
운영 조례	「공공감사법」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19조	「공공감사법」 제5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71조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감사법」 제5조 「세종특별법」 제21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3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법」 제5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공공감사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제66조

<표 19>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원도	충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자체감사활동 심사’ 자료를 통해 5개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감사위원회, 2015)

- 자체감사기구 인원은 기관별로 평균 60명이며, 감사대상기관 인원과 대비한 감사인력비율은 평균 1.28%<sup>5)</sup>임

□ 감사담당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약 32개월, 1인당 교육시간은 52시간임

- 연간 평균 47개 감사사항에 대해 2,642명의 감사 연인원을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담당자 1인당 평균 49.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함

□ 그 결과 평균 4,491백만 원의 재무조치와 351명의 신분조치, 그리고 678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함

<표 20>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 사례

(2015. 12. 31. 기준 평균)

구 분		감사위원회 (5개 기관)	전체 (17개 기관)
감사인력	감사대상기관 인원(현원)	5,636	5,150
	자체감사기구 인원(현원)	60	60
	감사인력 비율(%)	1.28	1.02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담당자 근무경력(월)	32.01	31.24
	감사담당자 교육시간	2,584	2,446
	1인당 교육시간	52.12	56.63

5) 현재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사인력 비율은 0.8%임(감사원, 2015)

구 분		감사위원회 (5개 기관)	전체 (17개 기관)
감사실시	감사사항 수	47	40
	성과감사 사항 수	0.6	0.2
	감사 연인원	2642.8	2460.2
	성과감사 연인원	61.6	18.1
	감사담당자 1인당 감사 일수	49.5	55.6
감사결과 및 성과	재무조치 실적(금액, 백만 원)	4491	19,705
	재무조치 성과(기관 예산 대비)	0.09	0.28
	신분조치 실적(인원, 명)	351	456
	신분조치 성과(감사 연인원 대비)	0.21	0.24
	행정조치 실적(건수)	678	583
	행정조치 성과(감사 연인원 대비)	0.28	0.26
감사결과 이행 및 공개	미집행률(2013~2015)	2.18	2.64
	공개율	99.28	99.45

자료: 윤석준(2017), 2015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사례

### 1) 법적 지위

- 제주특별법 제66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다수결로 최종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와 사무국 감사공무원의 감사 조사 활동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인 우리나라 자체 감사기구가 감사와 조사의 계획 및 그 결과를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와 감독을 받는 감사실 형태의 ‘기관장 부기관장 직속-전담형 자체 감사기구’임
  
-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형식이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미국의 지방정부 감사기구와도 상당히 유사함
  -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워싱턴주 감사원을 비롯한 미국지방감사원에서도 주헌법에 감사원은 주지사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미국 워싱턴주 감사원, 2013).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기존의 감사실 형태의 내부 감사기구를 해체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법적

지위를 ‘직무상 독립기관’ 으로 규정함(강주영, 2014)

-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중앙부처 감사 배제 등 외부 감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음(강주영, 2014)
-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적 취지가 반영됨

## 2) 기능과 역할

### (1) 감사대상기관

□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포함 동일)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교육감 포함,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음

- 즉,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이후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7)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7)

□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7)

- 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사무처
- ②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

관 및 교육기관

- ④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명 승인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 ⑤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 (2) 감사의 범위

□ 우리나라 관련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감사의 종류는 감사의 범위와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음(강주영, 2014)

- 감사원법 에서는 기관운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로 분류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분류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에 따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있음

□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의 분류에 따르면 감사의 종류는 크게 정기 감사(regularity audit)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 나눌 수 있음(염차배 외, 2011)

- 정기감사는 감사대상 업무나 조직활동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의 초점으로 하면서 행정기관이나 소속 구성원들의 자의적 행동을 금지하고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기 위함(강주영, 2014)
- 반면 성과감사는 투입의 경제성, 처리 및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능률성이나 효과성 측면을 감사의 초점으로 하면서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및 행정(경영)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비효율성이 발견되면 그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강주영, 2014)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자치감사의 범위는 ①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② 행정집행의 합리성 등 16개 사항임

<표 21>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

<p><b>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b>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li><li>2. 행정집행의 합리성</li><li>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li><li>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li><li>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li><li>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li><li>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li><li>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li><li>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li><li>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li><li>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li><li>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li><li>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li>14.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li><li>15. 특별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사항</li><li>1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li></ol>
---

- 같은 조례 제18조에는 자치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규정함

- 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함
- 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임

- ③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임
- 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임
- ⑤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임

**<표 22>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종류**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기존의 감사실 형태의 기관장 부기관장 직속-전담형 자체 감사기구(감사실)에서 실시하던 감사와는 다르게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를 모두 아우르는 감사수행이 요구됨(강주영, 2014)

### (3) 사무국 조직 및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 아래로 3과 9팀 1센터(부패방지지원센터)로 이루어짐

- 감사과는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과는 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등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과는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등 총 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7>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직도



□ 감사위원회의 현원은 총 56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3명, 특정직 2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과 24명, 조사과 18명, 심의과 8명 부패방지원 센터 4명으로 구성됨

□ 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국회입법조사처, 2009)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임기3년)
-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임(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음)

□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처리함(황현성, 2007)

### <표 23>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제9조(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 부친 사항
-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 5. 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

-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함(감사원, 2014)
  - 독임제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단일인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며, 합의제는 2인 이상의 다수인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임
  
- 독임제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나은 방식임
  - 합의제는 사무처리의 신중성이 보장되고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정과 다수의 전문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는 방식임(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따라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긍정적 측면) 다수의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됨으로써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합의에 의한 심의 의결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공평한 결과를 도출 가능함
  -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위원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감사결과 처리 가능함

□ (부정적 측면) 그러나 대부분 감사위원회가 다수의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됨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감사결과의 처리에 있어 합의 도출에 따른 처리기간의 장기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이나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감사기구 장으로서 감사관과 차이가 존재함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감사관이 부기관장 소속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인의 감사기구 장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표 24> 현행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5.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 ② 시 도의 공보사무와 감사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부시장 부지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7.2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 ② 제1항에 따른 시 도 본청에 두는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li> </ul> </li> <li>•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7.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 ① 부산광역시시장 밑에 .....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li> </ul> </li> <li>•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7.6.3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총무행정관을 둔다.</li> </ul> </li> </ul>
---

- 반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관장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간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함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표 25> 독립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비교

구분		독립제 감사기구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속	구성	♦ 1인의 감사기구 장	♦ 위원장과 다수의 감사위원
	소속	♦ 부기관장 소속(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 기관장 소속(시장 또는 도지사)
	직무상 독립	♦ 부기관장의 보좌기관으로 규정	♦ 직무상 독립을 규정(서울특별시 제외)
의사결정	방식	♦ 독립제(1인의 감사기구 장에 의한 결정)	♦ 합의제(다수에 의한 결정)
	권한	♦ 감사관의 결재 또는 전결	♦ 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
감사처리 결과	전문성	♦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보완적 확보	♦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확보 가능
	책임성 및 신속성	♦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 명확, 감사결과에 신속한 처리	♦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약화 및 처리 기간의 장기화 가능
구분		독립제 감사기구 (감사관)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소재 명확</li> <li>• 사무의 통일성과 신속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li> <li>• 사무처리의 신중성보장</li> <li>• 이해의 공평한 조정, 공정성 담보</li> <li>• 신뢰성 제고</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도출에 따른 처리 기간 장기화</li> <li>•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성 약화</li> <li>• 제주도 등 실무상 여전히 독립성, 전문성 등 논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기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전횡 문제 발생가능</li> <li>•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부족</li> <li>• 신뢰성 부족</li> </ul>

## V.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 문제점 진단

### 1. 중복·과잉감사의 문제점 지속

□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감사,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 자체기관에 의한 감사 등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 빈도가 높음

- 동일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감사로 인한 많은 감사자료 준비, 출석과 답변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적 감사와 중복감사가 지속되고 있음  
(송건섭·서보강, 2009: 23; 오영균·김용훈, 2006: 192)

- 국회 국정감사는 다수 기관에 대해 실시되다 보니 감사의 형식성,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에 따른 수감 부담, 사후처리의 실효성 미비함(한국행정학회, 2015: 22-23)
- 감사원감사는 감사원의 인력과 권한을 고려할 때 감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정 과제 또는 현안 중심의 감사로 인해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상선정 시 정치적 고려 문제가 발생함(오영균·김용훈, 2006: 197)
- 행정안전부 등 감사는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의 위법성까지 감사하며,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감사부담이 가중됨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감사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식과 경험 부족, 감사기법 미숙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해 감사의 형식화를 초래함(임승빈, 2005: 25)

-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특별한 요구 없이 개인 견해만 개진’하는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함
- 감사기간 또한 단기로 충분한 감사활동을 하기에 부족하고, 예산안 심의일정과 감사시기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함(이영균 · 이재영, 2009; 최봉기: 2007)

□ 대부분 감사가 합법성 감사로 지방행정의 무사안일주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2.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의 미해소

□ 현대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성과감사가 매우 중요한 감사영역이 되고 있음(강주영, 2014)

□ 이러한 성과감사는 정기 감사에 비해 다음의 네가지 장점이 있음(감사원, 1982).

- ①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음
- ② 감사대상기관의 사업, 제도, 내부통제 등에 관한 중요한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9)
- ③ 장래에 업무를 보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줌(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9)
- ④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및 공공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지원적 역할의 강화를 통하여 감사부작용을 줄이는 등의 이점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9)

□ 그러나 이러한 성과감사는 기존의 정기 감사에서 요구되는 감사의 전문성보다 더욱 높은 감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염차배 외, 2011).

- 정기 감사가중심이 되는 전통적 감사에서는 감사공무원이 회계학이나 법률학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사수행이 가능함
- 성과감사의 경우 회계학이나 법률학 이외에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정보학, 사회과학 방법론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일정기간 이상의 감사경험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강주영, 2014)

□ 그런데 감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서만 근무하는 감사직 공무원이 임면, 근무평정, 승진등 인사권이 도본청에 있음(강주영, 2014)

- 2~3년 근무 후에는 다시 도 본청이나 사업소로 돌아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전문성도 높지 않은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이 순환보직제로 배치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독립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고헌환, 2015)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자치단체는 감사직렬 또는 감사직류를 도입·운영하고 있거나, 장기근속을 추진하고 감사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는지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7급에 대한 감사직렬제 운영

- 감사직렬 정원 배정은 총 50명(감사위원회 43명, 본청 2명, 행정시 5명)이며 2014년 7급 3명 채용, 2015년 6급 3명 전직, 2016년 3명 채용 실시(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 제4항에 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 마련을 규정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보제한기간을 최소 3년으로 운영함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직위제 운영계획 에 따라 감사전문 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명(상반기 3명, 하반기 4명)을 지정하고 감사전문관에게는 경력 가산점 등 부여중임(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감사직렬 또는 감사직류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을 규정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 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운영(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201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30)과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 (2015.5.27.)에 따라 감사공무원의 전문직위(일상감사, 감사조사) 지정(2016.10.) 및 전문관 2명 선발 (2016.11.), 전문직위에 대한 수당지급 및 가산점 부여

□ 충청남도의 경우 감사직렬 또는 감사직류는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3조제2항에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담당자의 전보 제한에 관한 자체규정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1)에 따라 2년으로 운영중임
- 전문감사관제 시행(2016.12.28)을 통해 4개 분야(인사, 회계·계약, 컨설팅, 건설)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3년 전보제한)하고 전문직위 수당 및 인사우대 실시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감사공무원 감사직류 운영계획 (2015.5.7.)  
에 따라 5 ~ 7급에 대한 감사직류 운영

- 목표인원 64명(5급 16명, 6급 36명, 7급 12명) 중 2017년 9월까지 직류전환 및 신규채용 등 총 24명(38%) 총원(5급 11명, 6급 7명, 7급 6명)(현황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례 제15조 제4항에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 방안마련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9조제2항에 감사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보제한에 관한 자체규정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2년으로 운영

<표 26> 감사담당자 전문성 확보 관련 제도 운영 비교

구분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광주
감사직렬 (직류) 운영 여부	○ (감사직렬, 5~7급)	×	×	○ (감사직렬, 5~7급)	×
감사담당자 전보제한 기간	3년	3년	2년	2년	2년
감사 전문직위 운영 여부	○	○	○	○	×

자료 : 조형석, (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연구보고서, 감사원감사 연구원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폐해 방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직렬을, 서울특별시는 감사직류를 적용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수직류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부정적 인식(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직류 단위 평정에 따른 소수직류화로 인사상 불이익우려 등)으로 직류전환 신청 저조 등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2017)

<표 27> 제감사직렬 및 직류 적용 현황

구분	직군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근거
제주	행정	감사	감사	지방감사사무관	지방감사주사	지방감사주사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	행정	감사	감사	지방감사사무관	지방감사주사	지방감사주사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자료 : 조형석, (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연구보고서, 감사원감사 연구원

□ 이와 함께, 감사인력 구성도 전문분야에 따라 특정부서에 편중됨(예: 감사담당관은 행정직, 안전감사담당관은 기술직 인력으로 구성)

-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치감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함

### 3. 감사부서의 독립성 결여

□ 감사대상자와 동일한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일정 근무 기간 근무 이후 다시 당해 기관의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인사 체

## 계상 감사 요원으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움

-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활동에 관한 구체적 규정 미비함(고헌환, 2015)

□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자 직급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보다 낮은 경우 독립성을 저해함

-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관련 기록 및 문서접근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감사 결과 보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정비가 필요함

## 4. 자치단체장의 견제 미흡

□ 감사기구 장으로서 감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소속은 5개 기관 모두 도지사 및 시장 소속으로 규정(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표 28>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소속

구분	감사부서 소속	관련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제주특별법 제131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79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세종시법 제21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시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9조
충청남도	도지사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광주광역시	시장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85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3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79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법 제2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도지사 및 시장 소속으로 규정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9조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85조에 도지사 및 시장 소속으로 규정

□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움(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 감사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제 감사기구를 자체감사활동으로 허용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자체감사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함

-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관여 가능성이 일부 있어 법적 개선사항이 존재함

□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음(조규범, 2009)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효율성이 결여된 선심성 사업의 추진 또는 업적을 쌓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자의적인 행정 운영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 외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여의도 연구소, 2009)

□ 자치단체장이 예산 낭비 등에 대한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주민들의 투표로서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음(김귀영, 2012)

## 5. 감사위원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

□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2명은 서울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함

- 의회의 사전추천과 사후 동의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사전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에 의한 행정권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함(김진영, 2016)

- 감사위원회 위촉은 퇴직자, 법조인, 학계 등 특정 분야의 인사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감사 분야에 대한 심도가 있는 감사가 진행되지 못함

□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은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

- 감사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선발할 수 있는 인사권이 부족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국장과 공무원은 순환보직제에 따라 일정 근무 이후에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활동 지원과 조력 활동을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의 사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공무원은 행정직군으로 감사직(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에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으로써 일반직 순환보직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함

□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인사제청을 받아 인사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인사제청 시에는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실시를 규정(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실제 운영을 보면, 감사위원회 직원의 전보 및 승진 시 위원장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추천하면 도지사가 인사발령(감사원 현황자료, 2017)

□ 감사위원회 내 전보권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충청남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청남도 전체 국단위(감사위원회 포함) 내에서의 전보는 국장급이 실시(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등을 준용하고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나, 국단위 평정 시 감사위원회 분리 평정 실시(감사원 현황자료, 2017)

□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제33조 제1항에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해야 함을 규정

- 감사위원회 내 전보권은 별도 규정이 없고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등을 준용하되, 국단위 평정 시 감사위원회 별도로 분리 평정 실시(광주광역시 정기근무성적평정요령)

## 6. 감사위원회 재정상 독립의 문제

□ 조례 등에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조치가 미약함(강주영, 2014)

- 대부분 일반적인 형평의 원칙에서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감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함(고종석·김동욱, 2014)
-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 시 직무상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의무를 찾을 수 없고 편성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미비함(고현환, 2015)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감사위원회의 기능)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결정” 함

- 감사위원회가 예산편성 및 결산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어서 독립제 감사와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예산과 결산으로 인해 지방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7. 감사위원회의 소속 문제

□ 지방행정기관 소속은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며, 지방의회 소속일 경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갈등을 초래함

- 집행기관에 대한 제한된 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동일한 정당이 다수당일 경우 엄정한 감사가 어려움
-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는 행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이 다수당일 경우여·야 정당 간의 적법 감사보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감사의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 8. 교육감사 이원화 문제

□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학교법인 등 교육기관까지 포함시킴

- 감사위원회로 교육감사권을 일원화한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교육감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함(강주영, 2014)

- 교육부 등의 감사를 배제하여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적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공무원을 구성할 시에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일정비율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강주영, 2014)

- 그런데 감사위원회 설립당시 감사공무원 정원을 43명으로 정하면서 교육청 출신 교육행정직은 2명만을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41명은 도 소속 일반직을 정원으로 하였음(강주영, 2014)

□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 설립 후 감사위원회 구성의 정당성 문제와 교육 학예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제기함

- 종전에 교육부의 감사를 받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이외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함(강주영, 2014)

□ 이러한 교육감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감사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감사위원회와 교육청간 갈등의 문제로 지속되어 옴(강주영, 2014)

- 두 기관에서는 2012. 1. 10.까지는 '대행감사' 형태로 교육감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였고 2012. 1. 11.부터는 '의뢰감사' 형태로 변경하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결과를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강주영, 2014)

□ 그러나 이러한 교육감사의 이원화 운영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권을 교육감에게 인정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교육부 등 외부감사를 배제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강주영, 2014)

## 9. 감사의 운영 및 실효성 문제

□ 책임성이 약한 비상임위원들은 심의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회의 개최 수가 많고, 심의자료 등에 대한 감사위원의 사전검토 기간은 짧아 심층적인검토의 어려움이 존재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주 1회로 가장 자주 개최되며, 서울특별시는 매월 2회로 가장 적게 개최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표 29>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광주
회의소집 (정례회의)	매주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2회	매월 1회
안건 배부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개최 5일 전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안건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서면 의결 규정 여부	서면의결 불가 (미규정)	서면의결 불가(미규정)	○	○	○
수정(변경) 의결 비율	19.8%	12.4%	19.2%	12.4%	9.8%
회의록 작성	○	○	○	○	○ (상미감사위원)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 여부	사무국 내 업무상 열람 및 복사 가능	사무국 내 업무상 열람 및 복사 가능	감사위원회 내에서 열람 및 복사 가능	의결 결과 공개	비공개

자료 : 조형석, (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연구보고서, 감사원감사 연구원

- 반면, 감사위원들에 대한 안건 배부는 대부분 회의개최 3일 전까지이나, 세종 특별자치시는 5일 전으로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검토 기간 제공

□ 다만, 감사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을 보면 원안에 대한 수정 (변경)의결 비율이 9.8 ~ 19.8%까지로 나타나 위원회 회의는 비교적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 모든 기관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하며 회의록을 작성함

□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에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규정에 60일 이내(광주광역시약 50일 이내)로 통보기간을 명시해야 함

- 그러나 실제 운영현황에서와 같이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등 절차가 많아짐에 따라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표 3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리기준

지적 건수	각과		심의검토		과장·위원장	합계 (A)	총괄 팀. 감사위원 (B)	통보 (C)	총계 (A+B+C)	단축 기간
	공감 회의 및 종료 보고	처리 안	심의	부서 보안						
5건 이하	7일	14일	7일	3일	3일	34일	7일	3일	44일	△16
6~9건	8일	15일	10일	4일	5일	42일	7일	3일	52일	△8
10건 이상	9일	16일	14일	5일	6일	50일	7일	3일	60일	

□ 서울특별시의 경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적 건수별로 세분화하여 처리함으로써 규정된 기간에 감사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함(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2017)

- 감사결과 처리수준에 있어서도 현지조치나 훈계·경고의 비율이 높고, 지엽적 또는 경미한 수준의 처분요구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다만, 감사결과의 이행이나 공개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감사결과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와의관계 발전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같이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결과의 정기적 보고 방안도 고려 가능

## 10.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

□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구분하여 2006년 이후로 감사관제를 유지한 시도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시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등급은 다음과 같음

<표 31> 시·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등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등급 (매우우수)	●서울	●광주	●서울	●경기			●경기 ●부산		●경남	●경남 ○충남	●부산	●경기 ○충남
2등급 (우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전남 ○제주 ●충북	●강원 ●경가 ●광주 ●전북 ●충북	●강원 ●광주 ●대전 ●전북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전북 ○충남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세종 ●울산	●경남 ●전북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충북	○충남 ●대전 ●부산 ●경기	●울산 ○제주	●경기 ●경남 ●대전 ●울산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제주
3등급 (보통)	●울산	●전북 ●강원 ●대전 ●서울 ●경기	●경북	○제주 ●인천 ●충북 ●경북 ●대구 ●○충남	●인천 ●광주 ●울산 ●충북 ●강원	●대전 ●충북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세종 ●대전 ●광주	●전북 ○충남 ●울산 ○세종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전북 ○광주 ○세종 ●대구 ○제주	●인천 ●경기 ●강원 ●전북 ●부산 ○세종 ○광주 ●대전	●○강원 ●경북 ○광주 ●대구 ○제주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북
4등급 (미흡)	●대구 ●부산 ○제주	●충남 ●인천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울산 ●경남 ○제주 ●충남 ●전남 ●인천 ●대전 ●부산	●서울 ●울산 ●경남 ●전남	●서울 ●부산 ●전남 ●경남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전남 ●서울 ●인천 ○제주	○서울 ○제주 ●강원 ●인천 ●전남	●강원 ●인천 ○서울	●전남 ●충북 ●대구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남	
5등급 (매우미흡)				●부산	○제주		○충남	●경북	●경북 ●전남	○서울 ●경북		

\* 2011년 이후부터 등급으로 표시(감사위원회 도입○, 미도입●)

□ 독립제 감사기구인 감사관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구분하여 2016년 이후로 감사관제를 유지한 시도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시도의 자체감사활동과 실적 등을 감사원이 심사하여 부여한 등급은 다음과 같음<sup>6)</sup>

<표 32> 시·도별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등급

	2016	2017	2018	2019
A등급	●대전 ●전북 ○충남	●경남 ○제주 ○충남	●전북 ○충남	○강원 ●경기 ●전북 ○충남
B등급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광주 ●경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제주 ○강원 ●대구 ●대전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제주
C등급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세종 ●충북	●강원 ●경북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충북	○세종 ●충북 ●울산 ●부산 ○서울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D등급	○서울	●울산	●인천	●충북

\* (감사위원회 도입○, 미도입●)

6)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과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자체감사활동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가전체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사원이 심사기준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종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합의제적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시도와 기존의 감사관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도를 구분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기간(자체감사평가) 및 청렴도의 점수화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합의제적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성과 현황 및 개선 방향 도출이 가능함<sup>7)</sup>

<표 33> 합의제/청렴도/감사평가 포트폴리오 설계

청렴도	유지관리	청렴도↑ 합의제↓	청렴도↑ 상대적강점/지속 합의제↑
	(2/4 분면) [II] [I] (1/4 분면)		
중간값	(3/4 분면) [III] [IV] (4/4 분면)		
	중점 개선/투자	청렴도↓ 합의제↓	청렴도↓ 합의제↑ 최우선 개선/투자
중간값 <sup>8)</sup>			합의제

영역	전략방안	분할기준(의미)
I (1/4분면)	상대적 강점/지속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영역 (현행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
II (2/4분면)	유지관리	합의제 수준은 낮지만 청렴도가 높게 평가된 영역 (청렴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합의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III (3/4분면)	중점 개선/투자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영역 (제도 개선으로 합의제 수준을 높이고, 자원 배분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중장기 계획)
IV (4/4분면)	최우선 개선/투자	합의제 수준은 높지만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영역 (제도 개선과 자원 투입을 통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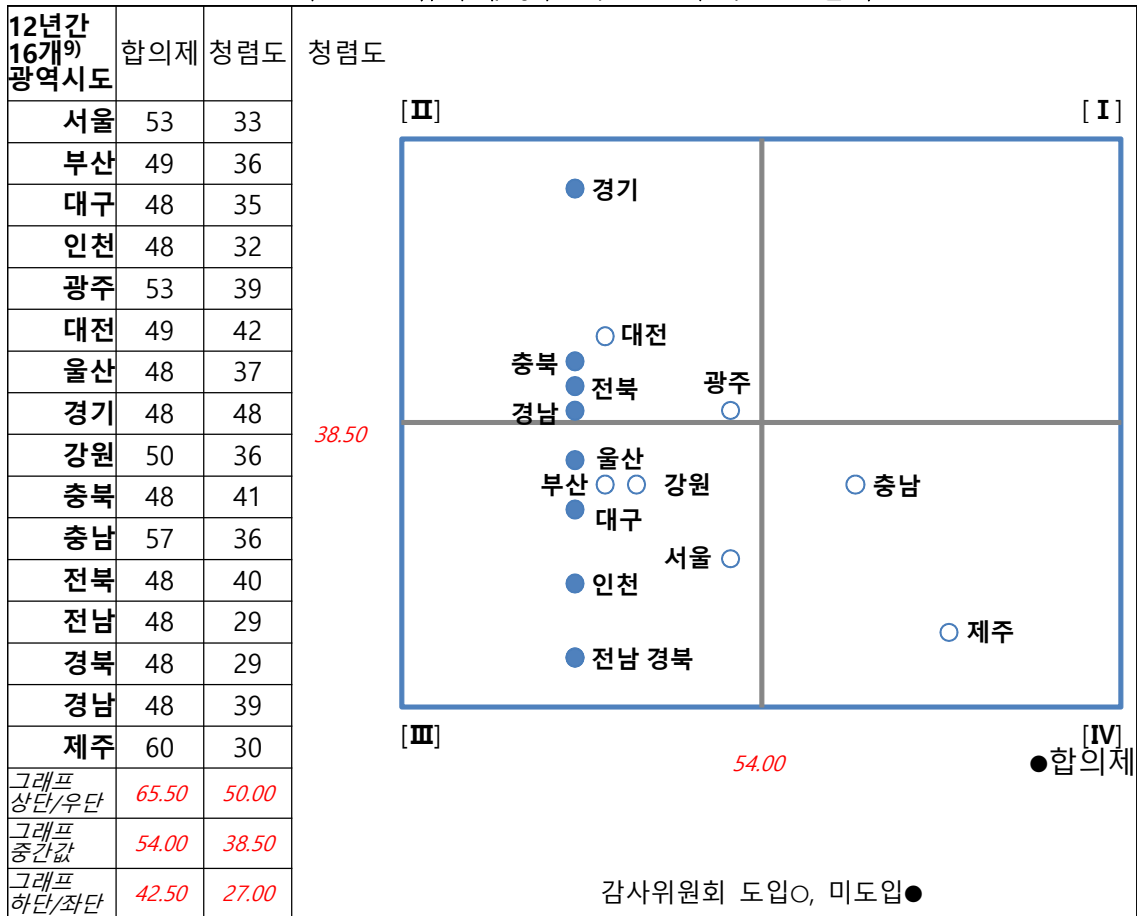
7)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합의제', '청렴도', '감사평가'의 지표를 활용함

- ① 합의제 수준을 추출하고자 감사관제 유지에 대해서는 매년 4점,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매년 5점을 부과하여 합의제적 성격 감사기구의 경험 누적치를 추출함
- ② 청렴도는 매년 공표된 5개 등급에 대해 1등급 5점, 2등급 43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을 부과하여 누적치를 추출함
- ③ 시도의 자체감사활동과 실적 등을 매년 감사원이 심사하여 부여한 자체감사심사 평가 4개 등급에 대해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을 부과하여 누적치를 추출함

8) 포트폴리오 작성시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이용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각각의 최대, 최소값의 중간값을 적용하여 사분면을 설정함

□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 포트폴리오(12년 기간)

<그림 18> 합의제/청렴도(12년 기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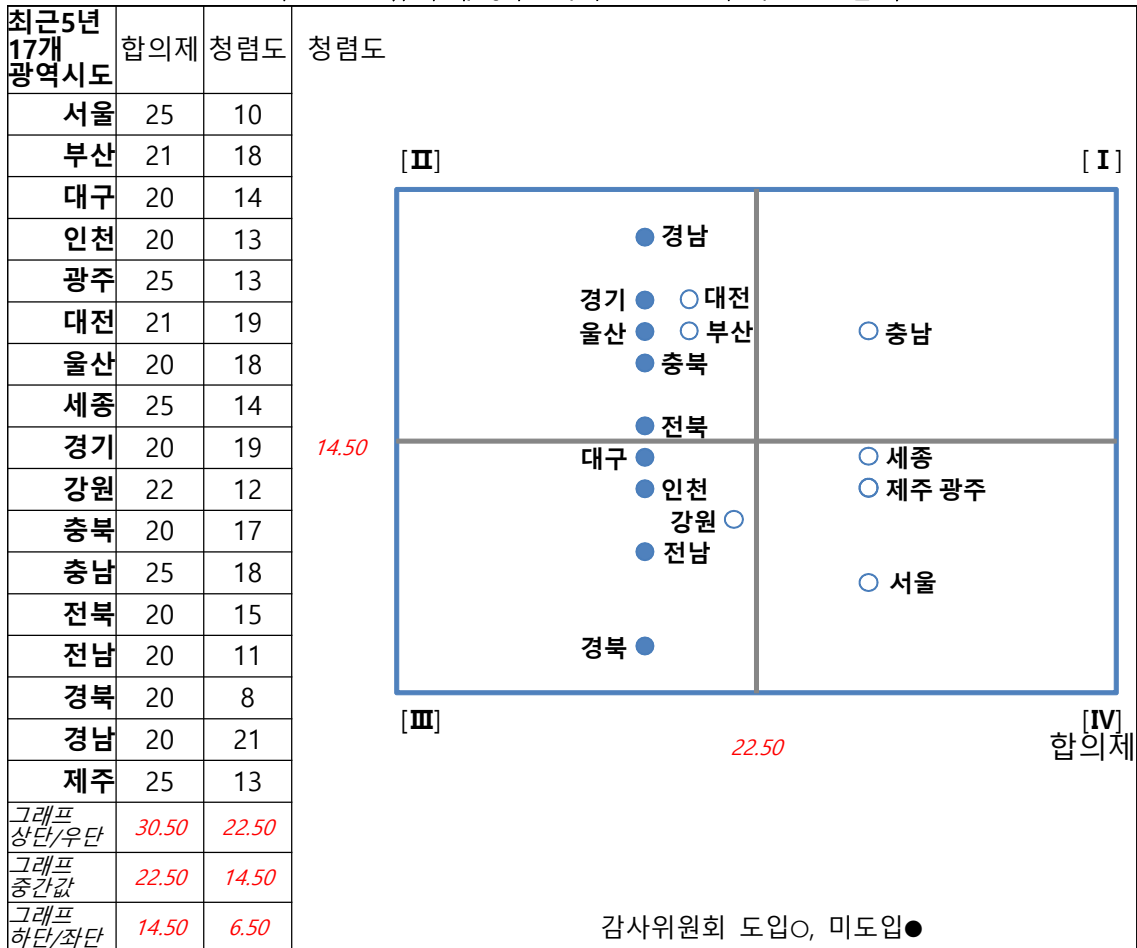


-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I] 영역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음
- 감사위원회를 경험한 제주, 충남의 경우 합의제 운영 수준은 높으나 초기 제도 개선 시점 운영 경험이 청렴도 제고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독임제적 감사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청렴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II] 영역

9) 12년간의 감사기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2011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는 위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함

□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 포트폴리오(최근 5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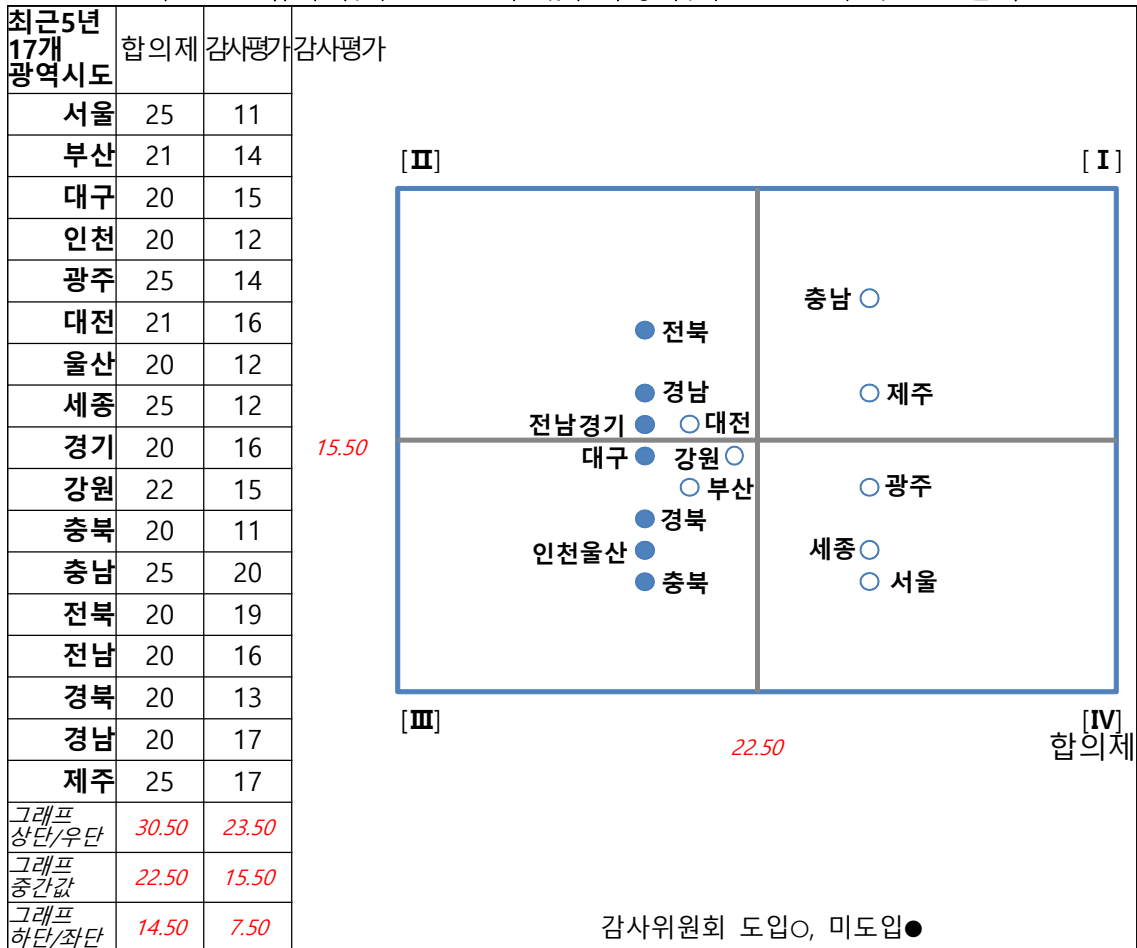
<그림 19> 합의제/청렴도(최근 5년 기간) 포트폴리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I] 영역에는 충남이 배치됨
- 장기간 감사위원회를 경험한 제주는 합의제 운영 수준은 높으나 초기 제도 개선 시점 운영 경험이 최근 5년간에도 청렴도 제고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
-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울산의 경우 독립제적 감사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청렴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이 짧은 대전, 부산도 청렴도가 높게 나타남: [II] 영역

□ 합의제 수준(5년간)과 감사평가(4년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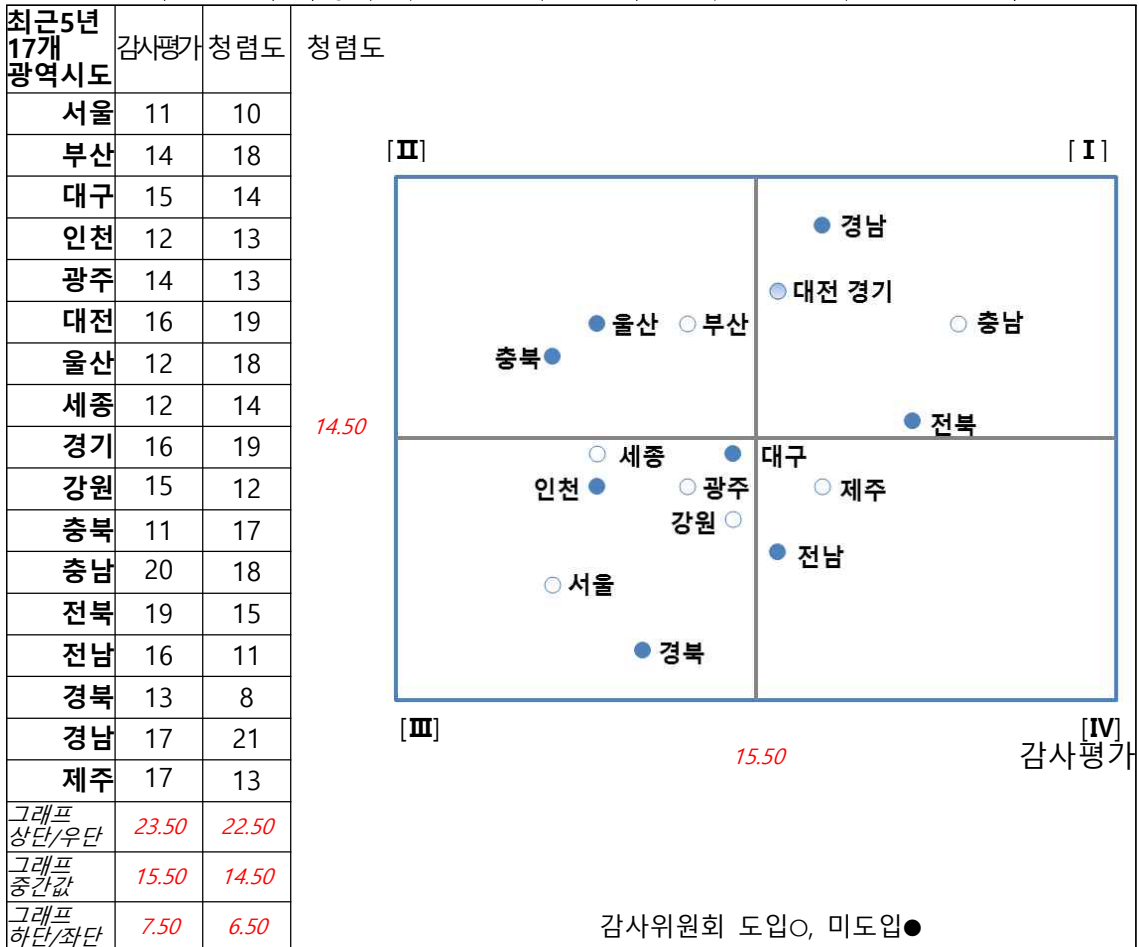
<그림 20> 합의제(최근 5년 기간)/감사평가(최근 4년 기간) 포트폴리오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기간 동안 감사원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감사평가 성과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I] 영역에는 충남과 제주가 포함됨
- 감사평가 성과가 높은 [I] [II] 영역에는 독립제적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전북, 경남, 전남, 경기와 합의제적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충남, 제주, 대전 포함
- 합의제 수준에 따른 청렴도 포트폴리오(최근 5년)와 합의제 수준(최근 5년)에 따른 감사평가(최근 4년)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비교하면 [I] 영역에 청렴도에서는 충남 1개였던 것이 감사평가에서는 충남, 제주 등 2개로 나타남

□ 감사평가 수준(4년간)과 청렴도(5년간) 포트폴리오

<그림 21> 감사평가(최근 4년 기간)/청렴도(최근 5년 기간) 포트폴리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기간 동안 감사원 공표 자체감사 결과 심사 평가 등급을 점수화하여 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청렴도와 감사평가 성과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I] 영역에는 경남, 대전, 경기, 충남, 전북이 포함됨
- 청렴도와 감사평가 성과가 모두 낮게 평가되는 [III] 영역에는 대구, 세종, 광주, 인천, 강원, 서울, 경북이 포함됨

## 11. 감사위원회 관련 자치단체(집행기관/의회)의 인식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경우에 의회에서는 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추세임; 더불어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주문하고 있음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집행기관의 감사위원회 인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7회 제2차[폐회중] 감사위원장에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8.02.02. 금요일)

감사위원장 청문회

감사위원장에정자는 청문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본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인력의 확충, 둘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체계 마련으로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셋째, 감사위원장에 사무국 직원 전체에 대한 임명재청권과 위원회 내 전보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마련, 넷째, 감사원과 같이 고유 식별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위관련자의 신분확인, 금융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제시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화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임명권자 또는 추천권자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소속이 결정된 다음에도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나. 공모제에 의할 것이냐, 개방형 직위처럼 여러 전문가를 널리 초빙하는 방식에 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감사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감사직렬,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업무에만 전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답변과 함께 감사위원장에 도지사 내지는 임명권자, 또는 소속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속될지 여하에 따라서 소속된 기관장의 인사권에서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답변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까지 왔는데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라든가 제도개선이 없다고 지적함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4대를 거쳐서 그나마 민선 6기 도정이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공적이랄까 업적을 하나 들라면 청렴도를 높여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17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가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2014년도에 16위, 2015년에 14위, 그리고 2016년도에 12위인데 4위로 수직 상승했다면서 전국 4위도 됐지만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면서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어떤 역할을, 제주도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

-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와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정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독립제적 감사관제를 활용하면서 추후 법령 변경을 통한 인사, 조직의 유연성을 전제로 감사위원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표 35> 경기도 의회/집행기관의 감사위원회 인식**

**경기도의회\_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화요일)  
감사위원회 장단점 질의 응답**

감사위원회의 장점과 단점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어차피 위원회의 기본적인 권능이 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단점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자유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인가는 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감사 사항을 다 감사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경기도의회\_제33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9.04 화요일)  
감사위원회 장단점 질의 응답**

직무상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전향적인 부분이 의회의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감사관은 지금 감사관의 입장에서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제도가 지금 현행 제도보다 더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우월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답변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동의한다면서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독립제보다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

**경기도의회\_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월요일)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등**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충원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있음을 답변

**경기도의회제33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6.13. 목요일)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등**

독립제로 설치된 감사관제하에서 지자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했으며 독립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보면 감사위원회 도입 후 독임제인 감사관제보다 도민 신뢰도와 공정성 회복이 입증되었음을 많은 의원들이 확인하였고, 일부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방문을 통한 운영방식과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위한 핵심정책 어젠다로 선정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데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질의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독립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제안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

### 경기도의회 제33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6.19. 수요일)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등

검토의견에서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저해한다거나 도의 입장이 감사위원회를 하기가 시기상조라고 하는가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해 당초에 조직형태 측면에서 독임제로 할 것이냐 합의제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수준의 답변

의원이 1980년대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공정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 등이 시류에서 많이 인정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시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국을 달라고 건의를 올렸고 경기도도 그 시도하고 발맞춰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하여 행안부가 그건 검토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특별이라도 세종하고 제주라는 똑같은 광역시도의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국을 줘거든요. 그럼 경기도에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도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판단의 문제라면서 독임제로 갈 거냐 위원제로 갈 거냐 그러는 건데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는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독립성·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

이에 의원은 지사의 철학과 맞는 감사위원회 합의제 기구가 오히려 공정하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동안에 민선6기 때 벌어졌거나 5기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전횡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조직의 변화라고 보면서 미온적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의견 제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많은 시도에서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것이 기존에 책임성과 효율성보다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이에 대해 의원은 7개 시도 광역단체에서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감사기능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았겠냐고 질의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적인 소견이 시대에 따라 틀린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많은 변화를 겪는 입장에서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의 추진 일관성이나 정책의 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관행을 바로잡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임기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과 같은 독임제의 감사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면 합의제 기구에 의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

**경기도의회\_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화요일)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감사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감사관은 경기도의 감사인력이나 또는 대상, 여러 가지 규모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장의 직급이라든지 또 이게 사무국 설치가 아주 필수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경기도가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고 그게 진행이 되면 위원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라는 답변

**경기도의회\_제34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7.15. 수요일)  
감사위원회 도입 필요성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다른 시도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원의 감사관 의견 질의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로서 운영하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도 가능하고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독임제는 그와 반대로 독단에 흐를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독임제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떤 결정이나 감사실시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감사관은 의원이 지적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감사관실에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법령 검토 중이라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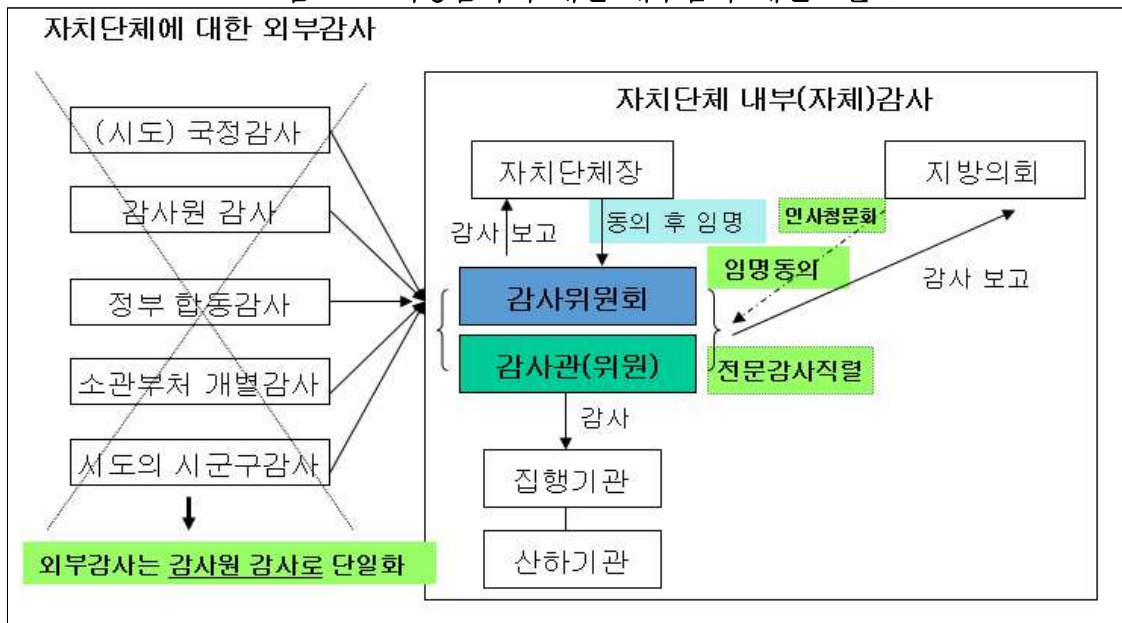
## VI.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도입방안

### 1. 감사위원회의 도입모델의 검토<sup>10)</sup>

#### 1)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1

- 전북도에서는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7인의 감사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 그리고 전북도에서는 전문감사직렬을 도입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그림 22> 지방감사에 대한 내부감사 개선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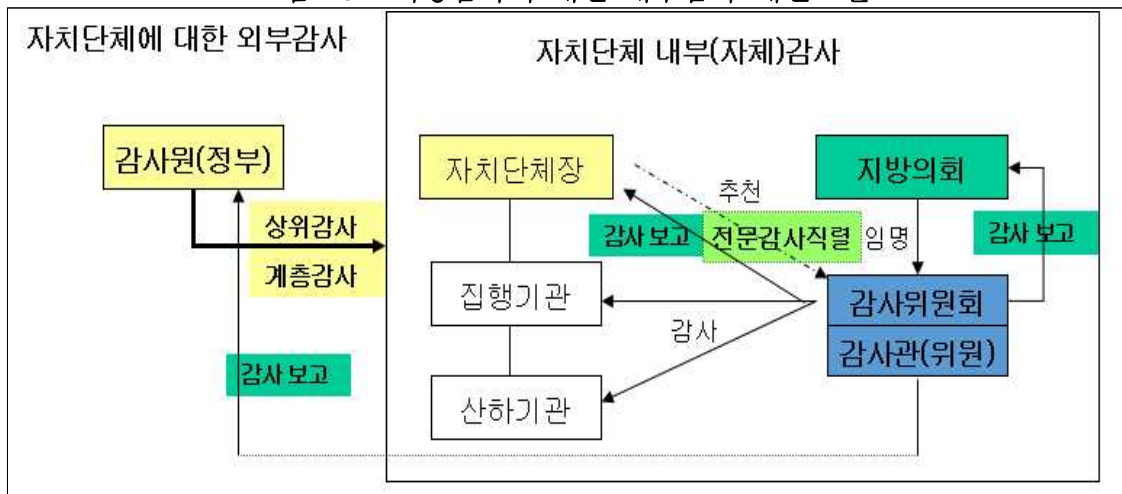


10) 안영훈(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을 참고하여 작성함.

## 2)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2

- 전북도에서는 지방의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7인의 감사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임명시,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할 있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도함
  
- 그리고 전북도에서는 전문감사직렬을 도입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도하도록 함

<그림 23> 지방감사에 대한 내부감사 개선모델 2



## 3) 지방감사의 개선모델 3

- 전북도에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7인의 감사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 내지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할 있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도함



<표 36> 광역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유형

구분	광역자치단체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li> </ul>
자치단체장 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경상북도(감사관)</li> </ul>
부단체장 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광역시(감사위원회), 대구광역시(감사관), 인천광역시(감사관), 경기도(감사관), 충청북도(감사관), 전라북도(감사관), 전라남도(감사관), 경상남도(감사관)</li> </ul>

⇒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이 아니라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행정기관으로 설치 필요

-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지방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함(김진영, 2016)

## 2)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 확보

### □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현행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의 임기를 최소 3년으로 하고, 연임할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감사위원 자격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 감사위원의 시차적 임용을 도입해야 함

- 현행 감사위원은 임기개시일과 만료일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감사위원의 임기개시일의 시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의 일괄교체로 인해 감사업무의 단절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감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 감사기구와 소속직원에 관한 인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사권에 대해 실무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임명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강주영, 2013, 고종석·김동욱 2014) 하기 때문에 감사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감사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정도의 전보제한을 통해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함

### 3) 감사위원회의 재정권 확보

## □ 감사위원회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호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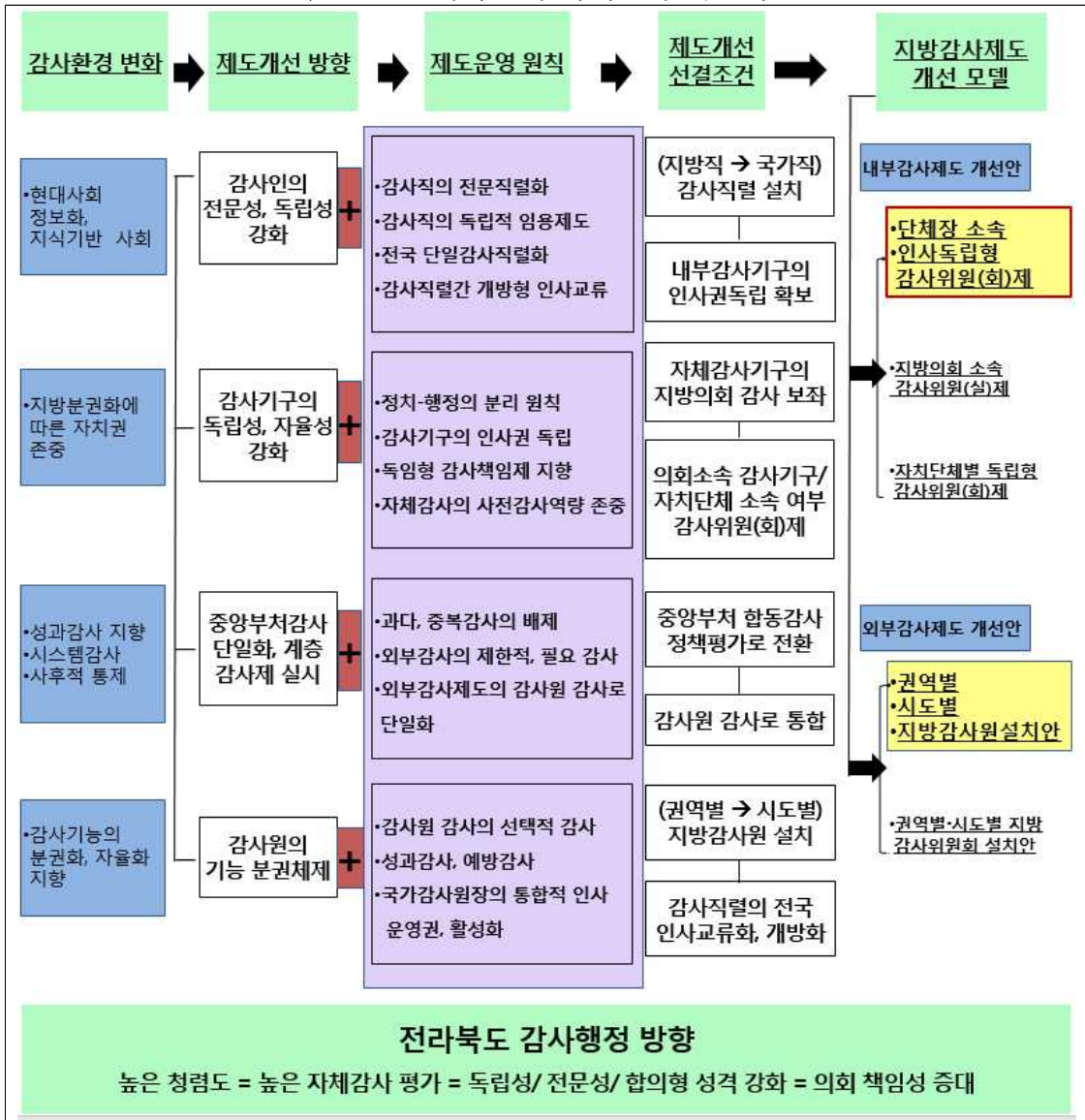
⇒ 예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함

### 3. 전라북도 감사제도 발전의 마스터 플랜<sup>11)</sup>

-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바, 첫째로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에 감사직렬이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인사권 독립확보가 필요함
  
- 둘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권 존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지방의회 감사 보좌, 의회소속 감사기구/자치단체소속 외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셋째, 성과감사 지향, 시스템 감사 및 사후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감사 단일화, 계층 감사제 실시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앙부처 합동감사를 정책평가로 전환하고 감사원 감사로 통합해야 함
  
- 넷째, 감사기능의 분권화, 자율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기능의 분권화 체제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권역별 → 시도별 지방감사원 설치, 감사직렬의 전국 인사교류화, 개방화가 필요함

11) 안영훈(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을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25> 전라북도 감사제도의 마스터 플랜



□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볼 때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은 국민권의 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에서의 높은 수준을 넘어 지방분권 환경에 부응한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 독립성/전문성/합의형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도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 필요

- 위에서 제시한 감사제도의 마스터 플랜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의회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임



## IV. 결론

-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개선 방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 전라북도 차원의 합리적인 감사기구 도입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감사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국가는 기관분리형으로서 일본과 미국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관통합형으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 지방정부의 감사사례에 유의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감사위원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함
-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도입 사례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지향하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운영 근거는 공공감사법에서 찾을 수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131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검토함; 나아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총 8개가 있으며 모두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함

- 감사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검토하고자 의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가, 위원(위원장) 선임(위촉) 및 해임(해촉)에 대해 동의권이 있는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혹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있는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의회의 추천 관여 비율은 75%, 감사위원장 동의 관여 비율은 25%,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는 25% 수준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위원장 임명이나 위원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두고 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 독립제 감사기구인 감사관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구분하여 2006년 이후로 감사관제를 유지한 시도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시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자체감사에 대해 합의를 토대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합의제 수준과 청렴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초기 제도 개선 시점 운영 경험이 그대로 청렴도 제고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 감사

원 공표 광역자치단체별 청렴도 등급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운영 기간을 점수화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결과 합의제 수준과 감사평가 성과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한 자치단체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경우에 의회에서는 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추세였으며,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강조하는 경기도의회와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에서는 법령 변경을 통한 인사, 조직의 유연성을 전제로 감사위원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 3개의 모델을 검토하였는데 모델1은 자치단체장 직속 감사위원회, 모델2는 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모델3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형태로 하되 위원 임명시 청문회 및 의회 동의, 전문감사직렬 등의 도입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권 독립 확보(위원장 임기 및 위원의 시차적 임용 등), 재정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가 감사제도 발전의 마스터 플랜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성과감사/시스템감사 방향, 감사 기능의 분권화를 제시하면서 청렴도 평가, 자

체감사평가에서의 높은 성과 수준을 넘어 지방분권 환경에  
부응한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의 독립성/전문  
성/합의형 성격을 강화하면서 도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강조함

## 【 참고문헌 】

- 국내 감사위원회 관련 법률 및 조례  
2008~201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표 자료  
2016~2019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공표 자료
- 감사연구원(2009). 「공공감사체계 재정립 :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색」, 감사연구원
- 강길훈(2015).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강화방안」, 감사원.
- 강인재·신기현·이철우·최진혁(2003),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2).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 권영주(2004).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두옥(1993). 정부간 관계 연구의 이론적 고찰, 「지방자치연구」 5(1).
- 김병준(1997). 정부간 관계의 이론. 정세욱 편저, 「정부간 관계-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김성호·강재규(2002). 지방자치단체 감사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원 연구보고서」.
- 김성호 외(200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 방안」. 행정자치부.
- 김순은(2003).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익식 외(198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2004). 「지방감사제도 개선방안」, 2004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및 제13회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 노병일(200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
- 박재완(1998). 공공감사체계의 효율성, 「한국행정연구」 7(3).
- 손경식(200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 12월호.
- 손경식(2003a).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 1월호.
- 안영훈(2004).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제164회 정책&지식 포럼집」, 한국정책지식센터.
- 안영훈(2009).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중앙정부 자체감사의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안영훈(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의정포럼 자료집」, 경기연구원.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양지숙(2018)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
- 오영균(2004).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오영균·김용훈(2006). 분권적 지방감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 윤석준(2017). 「2015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 윤재선(2001). 일본에서의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연구과제, 「지방행정연구」 15(1).
- 윤태범 외(1995). 「지방화시대의 지방감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기우(200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지방감사제도개선 토론회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중(1996).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지방자치연구」, 8(2).
- 이영균(2010). 「자체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뢰받는 노동행정

- 구현 : 자치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정세욱(200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연구, 「지방감사제도 개선토론회 자료집」.
- 조규범(2016).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293.
- 조성호(2006).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CEO Report.
- 조성호·윤희웅(2008).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와 정책」 vol No.1.
- 조성호(2017). 「민선7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시스템 구축방안」,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프.
- 조형석(2018).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감사연구원.
- 조형석(2017). 「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이슈연구」, 감사연구원.
- 지방자치연구소(200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 한양대학교.
- 최길수(2003). 영유아보육정책의 정부간 관계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Wright의 모형을 중심으로, 「2002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최병대·송광태·김현소(1996).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최영출(2006). 영국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자치행정」 8월호.
- 최용환(201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방안, 「의정포럼 자료집」, 경기연구원.
- 최유성(199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하혜수(1997). 국가경쟁력과 중앙-지방관계: 중앙통제방식의 전환. 「경기연구」 제2호.

행정자치부(2002), 「내부자료」.

허전(2015).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우리에의 수용가능성.  
「공법학연구」 16(2).

Barzelay, Michael(1996). Performance Auditing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OECD, *Performance Auditing and the Modernization of Government*.

Chandler, J.(1991). *Local Government Toda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unsire, Andrew(1981). Central Control over Local Authorities: A Cybernetic Approach, *Public Administration*, 59.

Rhodes, R. A. W.(1983).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Gower Publishing Co. Ltd.

Wolman H. & M. Goldsmith(1992). *Urban Politics and Policy*, Oxford: Blackwell.

Wright, D. S.(197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 Ltd.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内部統制・監査に関する研究会(2018).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内部統制制度の導入・実施ガイドライン(たたき台).

総務省. 「現行の地方公共団体の監査機能について」(2020.8.29 검색 soumu.go.jp)

日本 地方自治法

## 【 부록 】

### 부록 1: 국내외 법률 : 감사위원회 관련 조문 보유 법률

1. 일본 지방자치법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 일본 지방자치법  
감사위원 조문**

<p><b>第百九十五条</b> 普通地方公共団体に監査委員を置く。</p> <p>○2 監査委員の定数は、都道府県及び政令で定める市にあつては四人とし、その他の市及び町村にあつては二人とする。ただし、条例でその定数を増加することができる。</p> <p><b>第百九十六条</b> 監査委員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会の同意を得て、人格が高潔で、普通地方公共団体の財務管理、事業の経営管理その他行政運営に関し優れた識見を有する者(議員である者を除く。以下この款において「識見を有する者」という。)及び議員のうちから、これを選任する。ただし、条例で議員のうちから監査委員を選任しないことができる。</p> <p>○2 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の数が二人以上である普通地方公共団体にあつては、少なくともその数から一を減じた人数以上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職員で政令で定めるものでなかつた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p> <p>○3 監査委員は、地方公共団体の常勤の職員及び短時間勤務職員と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p> <p>○4 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は、常勤とすることができる。</p> <p>○5 都道府県及び政令で定める市にあつては、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のうち少なくとも一人以上は、常勤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6 議員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の数は、都道府県及び前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市にあつては二人又は一人、その他の市及び町村にあつては一人とする。</p> <p><b>第百九十七条</b> 監査委員の任期は、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者にあつては四年とし、議員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者にあつては議員の任期による。ただし、後任者が選任されるまでの間は、その職務を行うことを妨げない。</p>	<p>제195조 보통지방공공단체에 감사위원을 둔다.</p> <p>○ 2 감사위원의 정수는 도도부 현 및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에 있어서는 4인으로 다른 도시와 읍면에 있어서는 2인으로 한다. 그러나 조례에서 그 정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p> <p>제196조 감사위원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격이 고결하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관리 사업의 경영 관리 기타 행정 운영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의원인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식견을 가진 자"라 한다) 및 의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조례로 의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p> <p>○ 2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수가 2인 이상인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수에서 1을 뺀 인원 이상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직원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p> <p>○ 3 감사위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상근 직원 및 단시간 근무 직원과 겸할 수 없다.</p> <p>○ 4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p> <p>○ 5 도도부 현 및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에 있어서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p> <p>○ 6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수는 도도부현 및 전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에 있어서는 2인 또는 1인, 기타 도시와 읍면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p> <p>제197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4년으로 하되,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의원의 임기에 의한다. 그러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p>
---	--

<p>第百九十七条の二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監査委員が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の遂行に堪え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監査委員に職務上の義務違反その他監査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議会の同意を得て、これ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議会の常任委員会又は特別委員会において公聴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p> <p>○2 監査委員は、前項の規定による場合を除くほか、その意に反して罷免されることがない。</p> <p>第百九十八条 監査委員は、退職しようとするとき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百九十八条の二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又は副知事若しくは副市町村長と親子、夫婦又は兄弟姉妹の関係にある者は、監査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p> <p>○2 監査委員は、前項に規定する関係が生じたときは、その職を失う。</p> <p>第百九十八条の三 監査委員は、その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っては、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監査基準（法令の規定により監査委員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監査、検査、審査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項において「監査等」という。）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の基準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に従い、常に公正不偏の態度を保持して、監査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2 監査委員は、職務上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その職を退いた後も、同様とする。</p> <p>第百九十八条の四 監査基準は、監査委員が定めるものとする。</p> <p>○2 前項の規定による監査基準の策定は、監査委員の合議によるものとする。</p> <p>○3 監査委員は、監査基準を定め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長、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又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p>	<p>제197조의2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감사위원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 수행이 힘들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감사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파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p> <p>○ 2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다.</p> <p>제198조 감사위원은 퇴직하려고 할 때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98조의2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부지사 또는 부시정 총장과 부모와 자식, 부부 또는 형제 자매 관계에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 2 감사위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관계가 생긴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p> <p>제198조의3 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 기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감사, 검사, 심사 외의 행위 (이하의 항에서 "감사 등"이라 한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에 따라 항상 공정 공정한 태도를 유지 하여 감사 등을 해야 한다.</p> <p>○ 2 감사위원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물러 난 후에도 같다.</p> <p>제198조의4 감사 기준은 감사위원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p> <p>○ 2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기준의 책정은 감사위원의 합의에 의한다.</p> <p>○ 3 감사위원은 감사 기준을 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 공안위원회, 노동위원회 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 이사회 및 위</p>
--	---

<p>委員会及び委員に通知するとともに、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4 前二項の規定は、監査基準の変更に ついて準用する。</p> <p>○5 総務大臣は、普通地方公共団体に対し、監査基準の策定又は変更について、指針を示すとともに、必要な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p> <p>第九十九条 監査委員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財務に関する事務の執行及び普通地方公共団体の経営に係る事業の管理を監査する。</p> <p>○2 監査委員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事務(自治事務にあつては労働委員会及び収用委員会の権限に属する事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き、法定受託事務にあつては国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ことその他の事由により監査委員の監査の対象とすることが適当で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執行について監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監査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p> <p>○3 監査委員は、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監査をするに当たって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財務に関する事務の執行及び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経営に係る事業の管理又は同項に規定する事務の執行が第二条第十四項及び第十五項の規定の趣旨にのっとりなされ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特に、意を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p> <p>○4 監査委員は、毎会計年度少なくとも一回以上期日を定め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5 監査委員は、前項に定める場合のほ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6 監査委員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事務の執行に関し監査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その要求に係る事項について監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원회에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4 전 2항의 규정은 감사 기준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p> <p>○5 총무대신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감사 기준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언을 실시한다.</p> <p>제199조 감사위원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경영에 관한 사업 관리를 감사한다.</p> <p>○2 감사위원은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사무(자치 사무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및 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를 제외하고 법정 수탁 사무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기타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p> <p>○3 감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경영에 관한 사업 관리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사무의 집행이 제2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의 취지의 하나로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p> <p>○4 감사위원은 매 회계 연도 적어도 한번 이상 기일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해야 한다.</p> <p>○5 감사위원은 전항에 정하는 경우 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다.</p> <p>○6 감사위원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해야</p>
---	---

<p>らない。</p> <p>○7 監査委員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要求があるとき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が補助金、交付金、負担金、貸付金、損失補償、利子補給その他の財政的援助を与えているもの出納その他の事務の執行で当該財政的援助に係るものを監査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が出資してい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が借入金の元金又は利子の支払を保証しているもの、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が受益権を有する信託で政令で定めるものの受託者及び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が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公の施設の管理を行わせてい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p> <p>○8 監査委員は、監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関係人の出頭を求め、若しくは関係人について調査し、若しくは関係人に対し帳簿、書類その他の記録の提出を求め、又は学識経験を有する者等から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p> <p>○9 監査委員は、第九十八条第二項の請求若しくは第六項の要求に係る事項についての監査又は第一項、第二項若しくは第七項の規定による監査について、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を決定し、これを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及び市長並びに関係のある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若しく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委員会又は委員に提出するとともに、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0 監査委員は、監査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の合理化に資するため、第七十五条第三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に添えてその意見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委員は、当該意見の内容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1 監査委員は、第七十五条第三項の規</p>	<p>한다.</p> <p>○ 7 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대출, 손실 보상, 이자 보급 기타 재정적 원조를 주고 있는 출납 기타 사무의 집행에 해당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을 감사 할 수 있다.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수익권을 가지는 신탁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수탁자 및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제24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p> <p>○ 8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고, 또는 관계인 장부, 서류 기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식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9 감사위원은 제98조제2항의 청구 또는 제6항 요구에 관한 사항의 감사 또는 제1항, 제2항 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결정하고 이를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와 장 및 관련된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 10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75조제3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에 첨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당해 의견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 11 감사위원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 또</p>
--	---

<p>定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のうち、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長、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若しく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委員会又は委員において特に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事項については、その者に対し、理由を付して、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委員は、当該勧告の内容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2 第九項の規定による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の決定、第十項の規定による意見の決定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の決定は、監査委員の合議によるものとする。</p> <p>○13 監査委員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の決定について、各監査委員の意見が一致しないことにより、前項の合議により決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項がある場合には、その旨及び当該事項についての各監査委員の意見を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及び長並びに関係のある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若しく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委員会又は委員に提出するとともに、これら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4 監査委員から第七十五条第三項の規定又は第九項の規定による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の提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の提出を受けた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長、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若しく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委員会又は委員は、当該監査の結果に基づき、又は当該監査の結果を参考として措置(次項に規定する措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講じたときは、当該措置の内容を監査委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委員は、当該措置の内容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5 監査委員から第十一項の規定による</p>	<p>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 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 자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당해 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 1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에 관한보고의 결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결정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결정은 감사위원의 합의에 의한다.</p> <p>○ 13 감사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에 관한보고 결정에 대해 각 감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전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당해 사항에 대한 각 감사위원의 의견을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와 장이 및 관련된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모임 기타 법률에 의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 14 감사위원회에서 제75조제3항의 규정 또는 제9항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에 관한 보고의 제출이 있을 경우,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 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 위원회 또는 위원은 당해 감사 결과에 따라 또는 해당 감사 결과를 참고로 조치(다음에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강구 한 때에는 당해 조치의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 15 감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p>
--	---

<p>勧告を受けた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長、教育委員会、選挙管理委員会、人事委員会若しくは公平委員会、公安委員会、労働委員会、農業委員会その他法律に基づく委員会又は委員は、当該勧告に基づき必要な措置を講ずるとともに、当該措置の内容を監査委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委員は、当該措置の内容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九十九條の二 監査委員は、自己若しくは父母、祖父母、配偶者、子、孫若しくは兄弟姉妹の一身に関する事件又は自己若しくはこれらの者の従事する業務に直接の利害関係のある事件については、監査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第九十九條の三 監査委員は、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の一人（監査委員の定数が二人の場合において、そのうち一人が議員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であるときは、識見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選任される監査委員）を代表監査委員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代表監査委員は、監査委員に関する庶務及び次項又は第二百四十二條の三第五項に規定する訴訟に関する事務を処理する。</p> <p>○3 代表監査委員又は監査委員の処分又は裁決に係る普通地方公共団体を被告とする訴訟については、代表監査委員が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を代表する。</p> <p>○4 代表監査委員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代表監査委員が欠けたときは、監査委員の定数が三人以上の場合には代表監査委員の指定する監査委員が、二人の場合には他の監査委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p> <p>第二百條 都道府県の監査委員に事務局を置く。</p> <p>○2 市町村の監査委員に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務局を置くことができる。</p> <p>○3 事務局に事務局長、書記その他の職員を置く。</p> <p>○4 事務局を置かない市町村の監査委員の事務を補助させるため書記その他の職員を</p>	<p>한 권고를 받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법률에 의한위원회 또는 위원은 당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조치의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99조의2 감사위원은 자기 또는 부모, 조부모배우자, 자손 또는 형제자매의 일신상에 관한 사건 또는 자기 또는 이러한 자가 종사한 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p> <p>제199조의3 감사위원은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 중 1인(감사위원의 정수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의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인 때에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을 대표 감사위원으로 하여야 한다.</p> <p>○ 2 대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서무 및 다음 항 또는 제240조의 3. 제5항에 규정하는 소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 3 대표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분 또는 재결에 따른 보통지방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대표 감사위원이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를 대표한다.</p> <p>○ 4 대표 감사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대표 감사위원이 빠졌을 때는 감사위원의 정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감사위원의 지정 감사위원이 2인인 경우에는 다른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200조 도도부현의 감사위원에 사무국을 둔다.</p> <p>○ 2 시정촌의 감사위원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 3 사무국에 사무국장 서기 기타 직원을 둔다.</p> <p>○ 4 사무국을 두지 않는 시정촌의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서기 기타 직</p>
---	--

<p>置く。</p> <p>○5 事務局長、書記その他の職員は、代表監査委員がこれを任免する。</p> <p>○6 事務局長、書記その他の常勤の職員の定数は、条例でこれを定める。ただし、臨時の職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p> <p>○7 事務局長は監査委員の命を受け、書記その他の職員又は第百八十条の三の規定による職員は上司の指揮を受け、それぞれ監査委員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p> <p>第二百条之二 監査委員に常設又は臨時の監査専門委員を置くことができる。</p> <p>○2 監査専門委員は、専門の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中から、代表監査委員が、代表監査委員以外の監査委員の意見を聴いて、これを選任する。</p> <p>○3 監査専門委員は、監査委員の委託を受け、その権限に属する事務に関し必要な事項を調査する。</p> <p>○4 監査専門委員は、非常勤とする。</p> <p>第二百一条 第百四十一条第一項、第百五十四条、第百五十九条、第百六十四条及び第百六十六条第一項の規定は監査委員に、第百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は代表監査委員に、第百七十二条第四項の規定は監査委員の事務局長、書記その他の職員にこれを準用する。</p> <p>第二百二条 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くほか、監査委員に関し必要な事項は、条例でこれを定める。</p>	<p>원을 둔다.</p> <p>○ 5 사무국 장 서기 기타 직원은 대표 감사위원이 이를 임명한다.</p> <p>○ 6 사무국 장 서기 기타 상근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임시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7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의 명을 받아 서기 다른 직원 또는 제180조의3 규정에 의한 직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각 감사위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p> <p>제200조의2 감사위원에 상설 또는 임시 감사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 2 감사전문위원은 전문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표 감사위원이 대표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선임한다.</p> <p>○ 3 감사전문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p> <p>○ 4 감사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제201조 제141제1항, 제154조, 제159조, 제164조 및 제166조제1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제153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감사위원, 제172조제4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 서기 다른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제202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감사위원회 조문

제43조(인사청문회)

③ 도의회는 제132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

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나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  
**감사위원회 조문**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록 2: 국내 광역자치단체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출범 순)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31조제1항·제3항·제7항, 제132조제4항 및 제13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 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삭제 <2015. 12. 31.>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전문개정 2015. 12. 31.]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1. 결위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③ 삭제 <2015. 12. 31.>

제8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② 감사위원회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 9. 25.>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④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전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25.>[제목개정 2015. 12. 31.]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7. 13.>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를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12. 31.>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 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증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③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기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개정 2013. 9. 25.>[제목개정 2015. 12. 31.]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0.>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④ 도지사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전보, 수당 등에서 우대하여야 하고,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⑤ 삭제 <2015. 12. 31.>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승인하는 법인·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제외한다) 등(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3. 9. 25.>
-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읍·면·동과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5. 특별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사항

1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부조리·불합리한 규제의 요인을 없앤 자

2.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본조신설 2013. 9. 25.]

제20조의3(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및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본조신설 2013. 9. 25.]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주특별법 제13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9. 2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5. 12. 31.>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제24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본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5. 12. 31.>

제2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부 칙 < 제862호, 2012.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092호, 201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524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 칙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비전임 (시간제)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3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등)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준용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겸직 등의 금지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겸직 등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2. 9. 20.>

제7조(심의·의결사항) <개정 2012. 9. 20.>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0.>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 9. 20.>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 9. 20.>

5. 시정·주의 및 개선, 권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 20.>

6. 삭제 <2012. 9. 20.>

7. 재심의 요구 등 <개정 2012. 9. 20.>

8. 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 9. 20.>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이하 “회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작성 등)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3호,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 그 밖에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0.>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자체감사의 대상 및 기관) 삭제 <2012. 9. 20.>

제13조(자체감사의 대상 및 기관) 삭제 <2012. 9. 20.>

제15조(위원회 회의규정 등) <개정 2012. 9. 20.>

제15조(위원회 회의규정 등) <개정 2012. 9. 20.>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0.>

제16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자치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원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 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감사위원장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 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지정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

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감사위원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기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5. 법률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시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승인하는 법인·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7.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8.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시장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자치감사의 의뢰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시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이전 감사에서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5.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와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시장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는 각하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8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원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부칙 제4조는 감사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 업무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특별법 제21조제6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의 조항 중 “감사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규정 등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시행될 때 까지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보며, “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한다.

####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5.>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 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7. 1. 5.>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 5.>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5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

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2019. 5. 16.>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 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전문개정 2019. 12. 3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 9. 29.>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 9. 29.>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 5. 18.>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6.]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5. 16.>]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5. 16.>]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 5. 16.>]

부칙< 제7400호,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
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
4. 시정·주의, 개선 요구
5. 통보, 권고, 고발 등
6. 적극행정 면책 심사
7. 재심의 처리
8. 감사의 생략
9. 감사사무의 대행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상임위원 중 2명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법 및 「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0조(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류 때에는 재판의 확정기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설명해야 한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규정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칙<2015.10.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에 따른다.

## 6.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원도에 설치하는 합의를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합의를제감사기구인 강원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8.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을 강원도의회가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1.8.>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0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상대방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사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감사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는 대해서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 규정 등)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강원도 자체감사에 대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른다.

부칙 <제4296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주의·개선·권고·통보·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9조제5항은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겸직 금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감사위원회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의 심의·의결 전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

여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시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담당자를 임명한다.

제13조(회의 운영 규정)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183호, 2018.12.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에 따른다.

## 8.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9. 25.>

제3조(감사위원회의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9. 25.>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촉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2명은 부산광역시의회를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9. 25.>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9. 25.>]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9. 25.>

1. 시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9. 25.>]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촉한다. 이 경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9. 25.>]

제9조(위원의 겸직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9. 25.>]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9. 25.>]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9. 9. 25.>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여비의 지급기준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8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9. 25.>]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9. 25.>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9. 25.>]

제13조(상대방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9. 25.>]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

[총선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9. 25.>]

제15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용한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9. 25.>]

[전문개정 2019. 9. 25.]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6.>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시비 보조 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구·군 및 구·군비 보조단체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제13조에서 이동 <2019. 9. 25.>]

[전문개정 2019. 9. 25.]

제17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반기별로 부산광역시의회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19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9. 25.>

[제14조에서 이동 <2019. 9. 25.>]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